

발 간 등 록 번 호

11-1430000-001183-01

www.kipo.go.kr

# 2012년도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사례집 2012.12

20  
12



# 목 차

직무발명에 대한 소개 .....	1
❖ 의의 및 현황 .....	3
❖ 제도의 필요성 및 근거규정 .....	4
❖ 직무발명제도 운영기업에 대한 혜택 .....	8
직무발명제도 우수 운영사례 .....	9
❖ (주)네오위즈 게임즈 .....	11
❖ (주)필룩스 .....	21
❖ 플러스기술(주) .....	27
❖ (주)코아옵틱스 .....	38
❖ (주)두산에코비즈넷 .....	46
❖ (주)세종파마텍 .....	54
❖ (주)코아비스 .....	62
❖ (주)에이비엠그린텍 .....	70
❖ (주)마미로봇 .....	76
❖ (주)리얼허브 .....	83
부록 .....	89
직무발명 모델규정 .....	91
Q&A로 알아보는 직무발명제도 .....	116
❖ 직무발명의 인정요건 .....	116
❖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의 권리와 의무 .....	126
❖ 예약승계규정 .....	134

❖ 보상금의 산정과 지급 .....	138
❖ 직무발명을 둘러싼 다툼의 해결 .....	148
❖ 기타 .....	153
직무발명 관련 규정 .....	155



# 직무발명에 대한 소개



## 직무발명에 대한 소개

### ✦ 의의 및 현황

직무발명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sup>1)</sup> 직무발명에서의 ‘발명’은 특허법상의 ‘발명’, 실용신안법상의 ‘고안’ 및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을 포함하는 개념임

기술의 복잡화 및 융합화에 따라, 직무발명이 기술혁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즉, 조직화되고 충분한 자본을 가진 기업, 연구소 및 대학 등이 연구개발을 주도하면서, 개인발명에 비해 직무발명의 비중과 가치가 점점 증대하고 있음

국내 특허출원 중 법인(기업 등)의 특허출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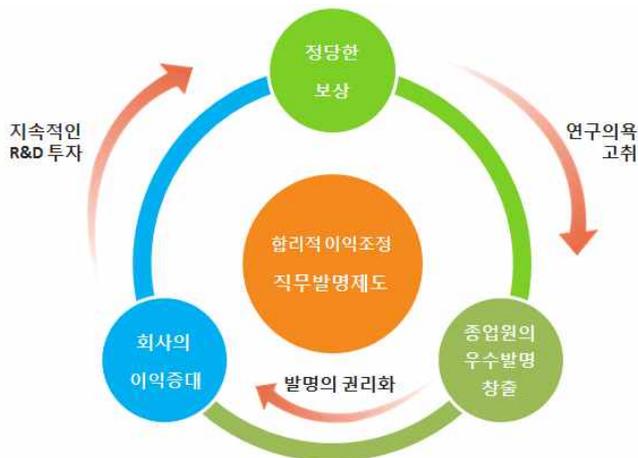
구분	'06	'07	'08	'09	'10	'11
개인출원(A)	27,062	32,189	33,443	35,588	33,267	35,424
법인출원(B)	139,127	140,280	137,189	127,935	136,834	143,500
계(C)	166,189	172,469	170,632	163,523	170,101	178,921
비율	83.7%	81.3%	80.4%	78.2%	80.4%	80.2%

[특허청]

1)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 ❖ 제도의 필요성 및 근거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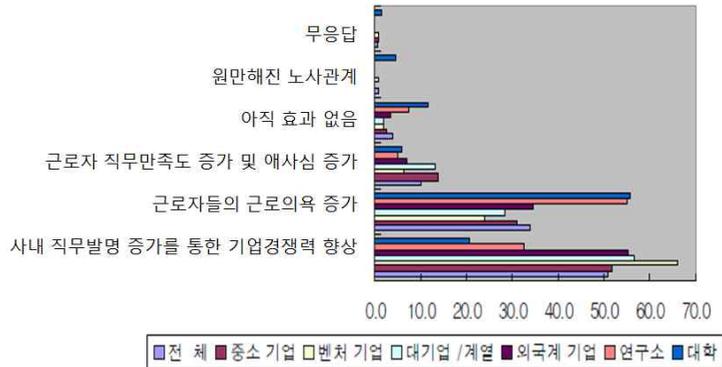
현대사회의 발명형태는 개인중심의 발명형태로부터 기업 등 조직적인 발명형태로 이행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종업원 등이 한 발명의 귀속관계가 문제되는데, 직무발명제도는 경제적 약자인 종업원등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발명활동을 직·간접으로 지원한 사용자등의 이익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발명의 이용방법 및 권리의 귀속관계를 명확히 하고 기업에서의 발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2006년에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을 발명진흥법으로 통합하여 규정하고, 그 동안 미비했던 점을 개선함으로써 직무발명제도가 발명진흥법에 의해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규율되고 운영되게 되었음

직무발명제도는 발명의 창출을 장려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의욕과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직무발명 보상실시로 얻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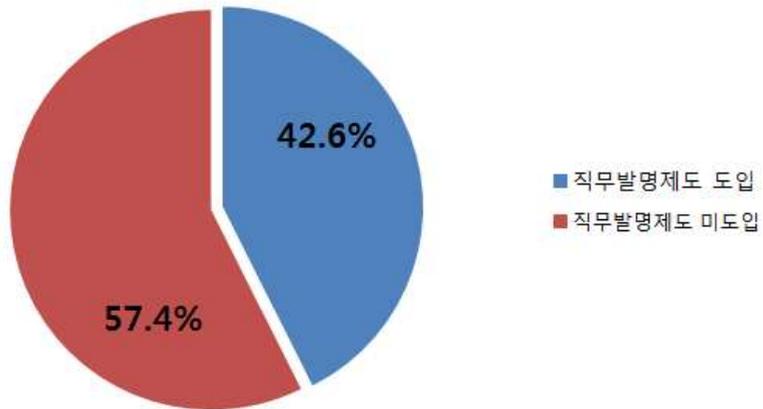


<출처 : '06.12.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실태조사(특허청)>

상기 특허청 통계에서와 같이,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한 기업체, 대학, 연구소의 경우 사내 직무발명 증대를 통하여 기업경쟁력의 향상을 가져왔다고 답하였음

또한 직원들이 직접 개발한 기술에 대하여 회사에서 적절한 보상을 인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이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러한 답변은 연구소와 대학을 중심으로 많았는데, 이는 직무발명제도가 획일적인 급여제도로 인한 직원들의 근로의욕저하와 이직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임을 보여 주는 것임

이러한 선순환 효과는 근로자들의 직무만족도 증가 및 애사심 증가로 이어지게 되며, 후술하는 우수사례에서도 이와 관련한 사례와 인터뷰가 언급되고 있음



<출처 : 직무발명제도 도입기업 현황,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11.1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그러나 직무발명제도는 ㉠보상금의 객관적인 산정의 난해함 ㉡기업의 획일화된 경영방침 ㉢근로자가 직무상 발명한 것은 회사에 귀속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 ㉣연구개발자 아닌 다른 직무담당자들과의 형평성 등과 같은 이유로 도입률이 일본(2007년, 86.7%) 등에 비해 저조한 형편임

하지만, 본서에서 다루고 있는 우수 운영기업의 사례에서 처럼, 직무발명제도는 종업원(직원)에게는 창의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사용자(회사, 연구소, 대학)에게는 종업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결과물을 이용한 경쟁력 강화, 매출신장, 기술 축적, 기업이미지 제고 등을 가져오므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음

우리 회사에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면  
회사에서 지불해야 하는  
비용만 늘어나지 않나요?  
도입효과가 무엇인가요?

물론, 임금 이외의 비용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도를 먼저 도입한 회사의 사장님들의 설문결과

①기업경쟁력 향상

②직원들의 근로의욕 증가

③애사심 증가

등의 효과로 인해,

회사의 발전에 직무발명제도가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제도는 작은 투자로 회사의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효과

기업 경쟁력 향상

근로 의욕 증가

애사심 증가

기술 축적

기업이미지 제고



## ❖ 직무발명제도 운영기업에 대한 혜택

### 가. 정부 세액공제

#### 종업원(발명자)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사용자(기업)

직무발명 보상 지급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10조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시행령 제8조 제1항관련 별표6]

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한다.

### 나. 정부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 가점 부여 대상 사업

특허기술평가, 특허기술거래컨설팅, 특허종합지원(선행기술조사, 특허출원비용, 시뮬레이션 제작, 맞춤형 특허맵 작성)

### 다. 궁극적으로 기업의 발전에 기여

“기업은 보다 거시적 안목으로 발명자에게 ‘적당한 보상’을 해야 하고, 종업원은 보다 열심히 연구개발에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업이 직무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는 등 발명자에게 좋은 처우를 하고, 이것이 종업원의 훌륭한 발명으로 다시 이어진다면, 기업과 기술자 모두가 풍요롭게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업이 발전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제도를 두는 이유입니다.”<sup>2)</sup>

2) 김준호, 「아이디어 스파크」, 2011년, 159~160면, 양문출판사



직무발명제도  
우수 운영사례



## 직무발명제도 우수 운영사례

### ❖ (주)네오위즈 게임즈

#### 가. 기업개요



본사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92-2 네오위즈타워

홈페이지 : [www.neowizgames.com](http://www.neowizgames.com)

설립일 : 2007년 4월 26일

대표이사 : 윤상규

주요연혁 : 2007.04 네오위즈 기업분할 통해 (주)네오위즈게임즈 설립

2007.12 '아바(A.V.A)', '2007 대한민국 게임대상' 대상,  
게임그래픽, 게임캐릭터 3개 부문 수상

2007.11 일본 게임 기업 '게임온' 인수

- 2008.06 미국 법인 NEOWIZ GAMES Inc. 설립
- 2008.06 중국 법인 NEOWIZ GAMES China 설립
- 2008.12 ‘슬러거’, ‘2008 대한민국 게임대상’ 인기게임상  
(온라인 게임 부문) 수상
- 2009.08 ‘크로스파이어’ 베트남 온라인 게임 1위 등극
- 2009.09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 2010.05 온라인 게임 개발사 (주)씨알스페이스 인수  
(現 네오위즈씨알에스)
- 2010.07 ‘FIFA 온라인2’, 국내 동시접속자 22만 명 돌파
- 2010.10 ‘한국 IR대상’ 우수상 수상
- 2010.11 ‘제 47회 무역의 날’ 지식경제부장관상 수상
- 2010.12 ‘2010 대한민국 콘텐츠 어워드’ 대통령상 수상
- 2011.03 ‘피망’, 국가고객만족도(NCSI) 웹보드 게임 부문  
1위 선정(업계 최초 3년 연속)
- 2011.06 ‘제5회 대한민국코스닥대상’ 최우수투명경영상  
수상
- 2011.06 PC방 솔루션 개발사 ‘에이시티소프트’ 인수
- 2011.11 ‘GWP 2011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본상 수상 (2년 연속)
- 2011.12 ‘제10회 정보보호 대상’ 특별상 수상
- 2012.01 ‘2011 고용창출 100대 기업’ 선정
- 2012.09 ‘크로스파이어’, 중국 동시접속자  
400만 명 돌파

## 나. 주요 제품

(주)네오위즈게임즈(대표 윤상규)는 온라인 게임을 개발 및 퍼블리싱하

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게임사입니다.

게임포털 피망(www.pmang.com)을 통해 슈팅, 스포츠, 역할수행게임(RPG) 등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주요 게임으로는 FIFA 온라인 2, 크로스파이어, 스페셜포스, 슬러거, 아바(A.V.A) 등이 있습니다.

특히, 슈팅과 스포츠 게임 장르의 대중화를 선도한 장본인으로 국내 최고의 퍼블리싱 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내·외부 게임 개발 스튜디오를 통해 경쟁력 있는 게임 개발 및 게임 라이선싱, 마케팅, 서비스 운영 등 게임 서비스 전반에 걸쳐 핵심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이를 바탕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를 비롯 북미, 유럽 등 해외 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 1) 네오위즈게임즈 대표 게임 소개



### FIFA 온라인 2

<FIFA 온라인 2>는 FIFA(국제축구연맹) 독점 라이선스를 바탕으로 전세계 31개 리그, 571개 클럽, 199개국의 국가대표팀 및 1만 5천 명이 넘는 선수를 직접 플레이 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정통 온라인 축구게임입니다.



### 슬러거

<슬러거>는 국내 프로야구의 인기와 함께 성장해 온 온라인 야구 게임으로, 2009년 이후 최고 동시 접속자 3만 5천명을 기록하는 등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 야구 게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아바(A.V.A)

<아바(A.V.A)>는 치열한 현대 보병전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밀리터리 액션 1인칭슈팅(FPS) 게임입니다. Unreal Engine 3를 이용한 사실적인 그래픽과 뛰어난 연출력을 갖추고 있으며, 전 세계 43개국에 진출하여 국내는 물론 일본, 북미 시장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 스페셜포스

대한민국 FPS게임의 대중화를 이끌어낸 <스페셜포스>는, 정식 오픈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11만 명 이상의 동시 접속자 기록을 수립하기도 했으며,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 받고 있는 FPS 장르의 스테디셀러입니다.



### 레이더즈

<레이더즈>는 논타겟팅을 바탕으로 한 에픽 몬스터와의 무한 전투, 클래스의 자유도, 무기제작을 통한 성장 시스템 등 기존 게임들과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이는 정통 MMORPG 입니다.



### 청풍명월

<청풍명월>은 한국과 동남아, 지중해를 포함한 전세계 명소를 여행하며 즐길 수 있는 온라인 낚시 게임입니다.

## 2) 피망(www.pmang.com) 소개

네오위즈게임즈의 온라인 게임 포털 ‘피망’은 2,3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게임 포털 입니다.

피망을 통해 슈팅, 스포츠, RPG, 웹보드 등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에게 최고의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정적인 기술 기반 인프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QA관리, 신뢰할 수 있는 빌링 및 보안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다. IP 전담부서의 설립과 운영

네오위즈게임즈에서는 2010년 경영진에서 IP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아래와 같은 단계적 강화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IP 전담부서는 2010년에 신설되었고, 팀장 1명, 변리사 2명, 전문인원 2명 등 총 5명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부서 내에 자체적 IP관리시스템을 설치 및 운용하여 효율적으로 IP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라. 발명의욕 고취

### 1) 본부 별 주기적 IP 교육

2010년부터 매년 전담부서의 주도하에 본부 별 IP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특허/디자인/상표/저작권의 개요 및 사례, 직무 발명보상규정, 출원절차, IP 계약, 소송/분쟁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경영진과 직원들의 IP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IP 활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2) 즉시적 보상금 지급

2010년 직무발명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1달 주기로 IP 관련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직원들에게 IP 출원 및 등록 등에 대한 보상금을 IP 발생 후 1달 이내에 즉각 보상받도록 함으로써, 발명 및 제안에 대한 동기 부여와 발명 의욕 고취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 (1)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규정

##### ① 출원 및 등록 보상금

- 출원보상금: 특허 50만원, 실용신안 30만원, 디자인 20만원
- 등록보상금: 특허 100만원, 실용신안 40만원, 디자인 30만원,  
저작권 20만원

② 실시보상금

- 실시 효과가 경영실적에 현저히 공헌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 보상을 실시

③ 처분보상금

- 회사 소유의 지적재산권을 유상처분(양도, 실시 허여 등)할 경우에는 그 특허권 등의 내용 및 수익금 등을 참작하여 처분수입금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

④ 포상

- 회사의 특허 출원, 등록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회사의 지적재산권 취득에 기여한 자 또는 부서에 대하여 별도의 포상을 함

(2) 직무발명제도 보상실적 및 사례

2010년 직무발명제도 시행 이후 2012년 6월까지 약 2억 8천만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직무발명제도 시행 이전의 직무발명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도에 사내 발명경진대회를 진행하여 우수 발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보상금 외에 별도로 2천 2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3) 발명자 편의의 방문 상담 실시

IP 전담부서에서는 직원들이 발명을 제안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상담을 요청하여 방문 상담을 실시하고, 전담부서와 멀리 위치한 원거리 부서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방문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문 상담을 통하여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고, 다양한 실시 예를 이끌어 냄으로써 권리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4) 발명경진대회 개최

사내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2011년도에 사내 발명경진대회를 진행하였으며, 총 600여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하여 심사를 거쳐 선별된 아이디어의 특허 출원을 진행하고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발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보상금 외에 별도로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마. 선택과 집중

### 1) 주요 서비스 및 서비스 국가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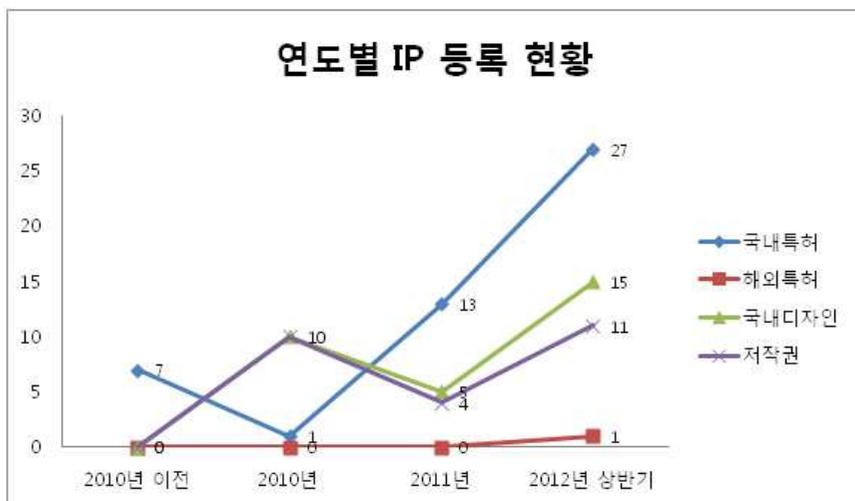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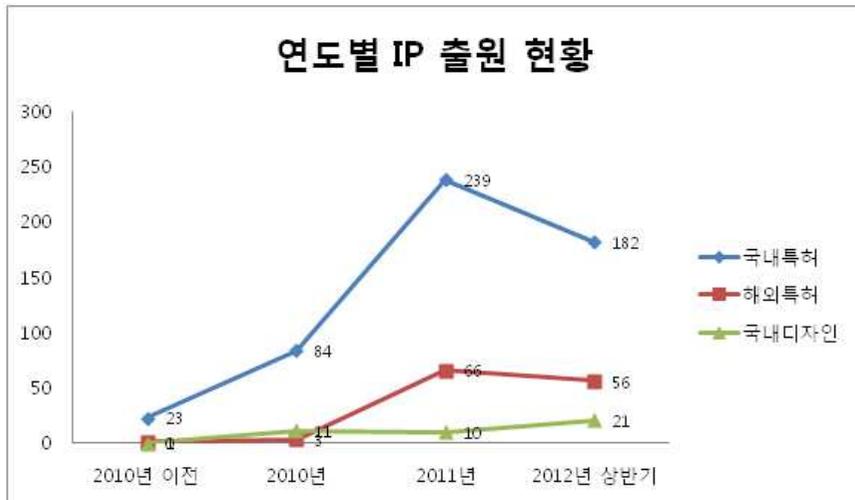
네오위즈게임즈에서는 IP를 주요 서비스 별로 분류하고 서비스 국가 별로 분류하여 관리함으로써, IP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 예로, 보유 IP 중 게임과 관련된 IP를 따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자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분류된 게임 관련 IP를 확인하여 라이선스 제의, 경고장, 및 침해 주장 등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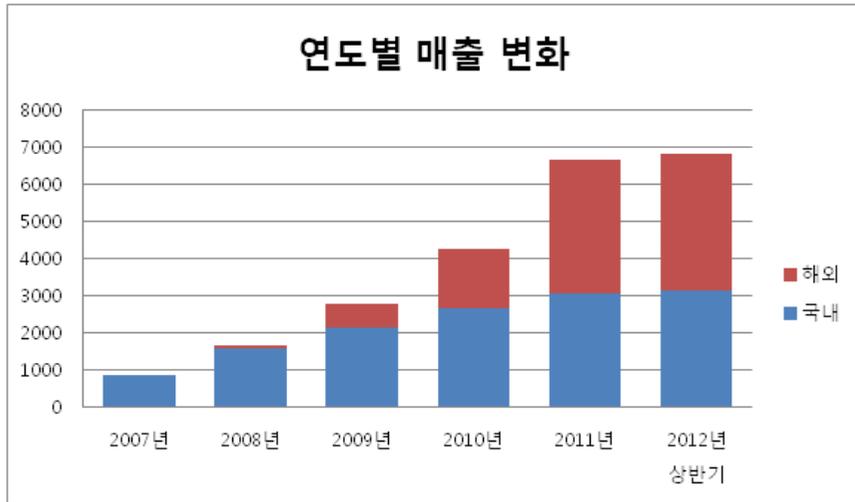
### 2) 주요 서비스 관련 IP의 집중 발굴 및 국내/국제 출원 강화

네오위즈게임즈에서는 주요 서비스를 선정하여 주요 서비스와 관련된 IP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발굴된 IP의 국내/국제 출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요 서비스로 선정된 게임의 경우 IP를 다수 확보

하여 안정적인 매출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참고로, 네오위즈게임즈의 IP 출원 및 등록 현황과 매출 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 그래프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10년 전담부서의 설립 및 직무발명제도 시행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IP 증가와 더불어 매출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네오위즈게임즈에서는 해외진출에 따른 해외 IP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해외특허출원 및 기타 해외 IP 확보를 늘려 해외 IP 경쟁력을 강화함에 따라, 2010년부터 해외매출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 바. IP 강화 및 활용

네오위즈게임즈에서는 장기적으로 IP 강화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IP 양적 강화를 통해 IP 경쟁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IP 질적 강화를 통해 IP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IP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IP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수익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주)필룩스

### 가. 기업개요



본사주소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광적로 235-48

홈페이지 : [www.feelux.com](http://www.feelux.com)

설립일 : 1984년 2월 7일

대표이사 : 노시청

주생산품 : 조명장치(LED등기구, 형광램프, 안정기, 조명시스템, 보안등, 경관등), 전자부품 및 소재(페라이트코어, 라인필터, 비드, 트랜스), 인테리어시스템, 렌탈조명, 감성조명 공부방

직무발명 도입년도 : 2008년

주요연혁 : 1975.06 보암산업 설립 (2000년 6월 사명변경)

1985.10 한국전자전 국무 총리상 수상

1992.09 조명기기 연구 사업부 설립

1995.05 해외현지법인 중국 산둥보암 설립

1996.03 해외현지법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설립

1997.07 해외현지법인 위해 필룩스 설립

1997.09 KOSDAQ 등록

2001.12 한국증권거래소 상장

- 2002.10 해외 현지법인 양광 필룩스 설립
- 2003.03 중국연구소 설립완공
- 2004.10 조명체험관 개관
- 2004.12 국제 우수전기 제품 대전 대통령상 수상
- 2007.02 2007 밀라노 리빙루체  
TOP DESIGNER상 수상
- 2007.03 경기도지사상 수상 / 공정거래위원회상 수상
- 2007.05 디밍제어 기술 우수발명품 선정
- 2008.04 2008 독일 프랑크 푸르트 Light + Building  
DESIGN PLUS 상수상
- 2008.10 2008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지식경제부)
- 2009.05 발명의 날 동탑산업훈장 수상
- 2009.2010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3년 연속 선정  
(지식경제부)

## 나. 주요 제품에 대한 설명

(주)필룩스는 일출부터 일몰까지 끊임없이 변하는 자연조명과 같이 인간의 생체리듬에 맞춰진 인감 중심의 자연조명을 연출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필룩스에서는 일출, 일몰, 한낮 시간의 변화에 따른 태양빛의 변화를 실내에서 그대로 연출 할 수 있도록 조명의 색온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인형상의 빛을 연출하기 위해 다크존(Dark Zone)이 없는 슬림라인 램프를 개발 하였으며, 다수개의 조명장치를 연결할 때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디바(D bar) 제품을 개발 하였습니다.



또한, (주)필룩스에서는 전자소재 및 부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자소재인 페라이트 코어(core) 및 부품인 트랜스포머(transformer), 라인필터(line filter), SMPS, INVERTER 등이 있습니다. .



## 다. 특허전담부서 설립과 운영

(주)필룩스는 2008년 지식재산권 전담인력 채용을 시작으로, 현재 총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을 담당하고 있는 특허경영팀은 회장 직할부서로 사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식재산권을 경영 전략에 맞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라.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

\* 국내 지식재산권 현황(최근 5년간)

	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		
	출원	등록	합계	출원	등록	합계	출원	등록	합계	출원	등록	합계
2008	19	3	22			0	13	13	26	11	11	22
2009	32	3	9	1		1	11	1	12	21	9	30
2010	34	4		1			10	6	16	11	8	
2011	27	5					7	8	15	15	9	
2012	10	3					9			7	1	
합계	122	18	31	3	0	1	50	28	69	65	38	52

\* 해외 지식재산권 현황(최근 5년간)

	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		
	출원	등록	합계	출원	등록	합계	출원	등록	합계	출원	등록	합계
2008	8		8	12	5	17			0	25	8	
2009	6	1	7	8	10	18	7	2	9	34	6	1
2010	5	4	9		10	10	4	6	10	29	5	4
2011	4	2	6			0	4		4	10	4	2
2012	2	2	4	4		4	4	3	7	15	2	2
합계	25	9	34	24	25	49	19	11	30	113	25	9

## 마. 특허교육 실적

(주)필룩스는 다양한 지식재산권 교육을 통해 임직원들의 지식재산권 의식을 고취시켜 자사의 주력 제품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 도출 및 계량 특허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사에서는 사내 강의 뿐만 아니라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특허의 중요성, 아이디어 도출방법, 특허정보검색 교육, R&D와 특허전략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자의 경우 개발단계에서부터 특허출원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진행되는 외부교육을 통해 지식재산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 바. 직무발명제도 보상금 지급규정 및 지급사례

(주)필룩스는 2008년부터 직무발명규정이 도입되어, 직무발명을 통해 도출된 아이디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은 출원, 등록, 실시 및 처분보상금으로 구분되며 아래 표와 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 \* 국내외 출원/등록 보상금

	특허		실용		디자인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국내	해외
출원	10만원	20만원	5만원		2만원	4만원
등록	15만원	25만원	10만원		3만원	6만원

### \* 실시보상금

순이익	보상금산정
1,000만원 이하	기준금액 × 20%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기준금액-1000만원) × 15%] + 200만원
5,000만원 초과	[(기준금액-5000만원) × 10%] + 800만원
* 순이익 ⇒ (총판매량×판매단가) - (제조원가 + 영업경비)	* 기준금액 ⇒ 순이익 × 이용률(당해 제품에서 특허가 이용되는 비율)

### \* 처분보상금

실시료 수입액 또는 양도금액	보상금산정
1,000만원 이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 30%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 1,000만원) × 20% + 300만원
5,000만원 초과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 5,000만원) × 10% + 1,100만원

\* 보상금 지급사례

보상연도	출원보상금	등록보상금	발명대회 포상금
2009년	97만원		330만원
2010년	267만원	193만원	370만원
2011년	316만원	72만원	150만원
2012년	321만원	209만원	
소계	1,083만원	474만원	850만원
합계	2,407만원		

## 사. 직무발명제도의 운영효과 및 매출의 변화

(주)필룩스는 직무발명제도 도입을 통해 임직원들로부터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으며, 도출된 아이디어를 통해 신제품을 개발 및 제품의 개선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직무발명을 통해 새로운 제품 및 계량 제품이 생산됨에 따라 매출이 증대되고, 매출이 증가됨에 따라 발생된 이익이 임직원에게 분배되어 더 많은 아이디어가 도출되어 궁극적으로는 회사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었습니다.

## ✦ 플러스기술(주)

### 가. 기업개요



본사주소 :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13 현대벤처빌 3층 304호

홈페이지 : [www.plustech.co.kr](http://www.plustech.co.kr)

설립일 : 1998년 03월 04일

대표이사 : 정석현

주생산품 : 단말인증서비스, 인터넷 사용관리 솔루션, 모바일  
유해차단 서비스

직무발명 도입년도 : 2009년

주요연혁 : 1998. 03. 법인 설립

1999. 03. 벤처기업인증 [중소기업청]

2000. 02. 최우수 중소기업상(인터넷기반·네트워크 S/W  
부문) 수상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02. 06. 제14회 정보문화상 공모전 국무총리상 수상

2008. 07. 소프트웨어품질 인증

2009. 1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2010. 11. 2010인테리전스 대상 지능형 응용 부분 우수

### 상 수상

- 2011. 04.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CC인증
- 2011. 05. 표창장 수상 [한국발명진흥회]  
특허스타기업 인증(3년 연속) [(재)서울산업통  
상진흥원]
- 2011. 07. 벤처기업 확인(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보증기금]
- 2011. 10. 대통령 표창 수상
- 2012. 11. 2012 전자 IT산업 특허경영대상  
라이센싱협회장 표창 수상

## 나. 회사 소개

플러스기술 주식회사(이하 ‘플러스기술’이라 한다.)는 1998년 국내 최초 필터링 S/W 개발사로 설립된 이래 15년간 축적된 기술력과 방대한 DB(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개인용 유해차단 서비스와 기업용 인터넷 사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터링 분야에 특화된 원천 기술 노하우로 ‘단말인증 기술’을 독자 개발하여 대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 협력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축적된 기술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고객 니즈형 토털솔루션 서비스’를 지향하며, 글로벌 네트워크 통신사업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고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다. 주요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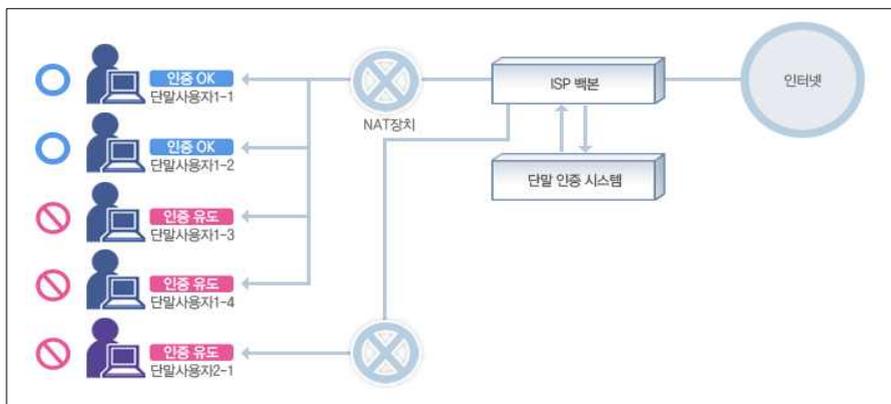
플러스기술의 주요제품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단말인증서비스

초고속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PC 및 공유기와 같은 단일 장비에 대해 인증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2004년부터 플러스기술이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기간통신사업자와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 협력 모델로 발전시켜 독점적 시장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고속 인터넷 망 하부의 개별 단말에 대해 검출 및 선별 차단이 가능한 플러스기술의 원천 기술이 있었기에 탄생한 ISP 부가서비스입니다.

단말인증서비스는 일부 사용자에게 의한 과다 트래픽 유발을 제재함으로써 ISP 사업자에게는 망 투자비 절감 효과 및 ARPU 증대 효과를 일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에게는 네트워크 접속 품질 향상 효과를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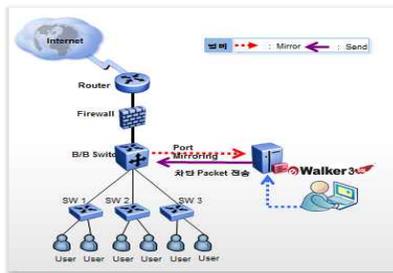


### 2) 인터넷 사용관리 솔루션

국내 최초로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을 개발한 기술력과 15년간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2001년부터 서비스되고 있는 최적의 기업용 인터넷 사용관리 솔루션입니다.

기업 내 직원의 인터넷을 이용한 비업무 사이트 접근을 원천적으로 감시/차단하고, 그 사용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향상하게 시키고 내부기밀 유출을 방지할 뿐 아니라 효율적인 내부 네트워크 관리를 통하여 기업의 통신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축적된 Know-How와 국내 유수의 기업과 관공서 등의 구축 실적을 바탕으로 검증된 안정성과 고객지향적인 관계유지를 통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국방부, 특허청 등 공공부문 점유율 1위의 자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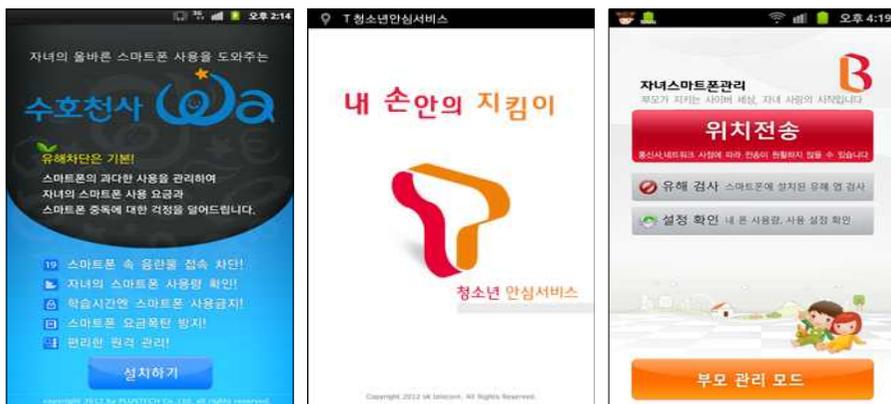


### 3) 모바일 유해차단 서비스

1998년 설립 이래 인터넷 유해차단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술력과 노하우를 축적한 플러스기술은 스마트폰의 사회적 과급력을 인지하고 앱 개발에 착수, 이전 PC에서만 제공되던 유해차단 서비스를 스마트폰에 적용한 모바일 유해차단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자녀의 스마트폰을 통한 유해정보 접속 관리 뿐 아니라 사용시간 관리를 통해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며, 실시간 위치 조회 및 SOS 긴급 문자 전송 기능 등 여러 유익한 기능 제공을 통해 자녀의 안전까지 지켜주는 가정의 수호천사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2011년 국내 최초의 모바일 유해차단서비스인 ‘B자녀스마트폰관리’를 SK브로드밴드의 부가서비스로 출시하여 현재 활발히 운영 중이며, 2012년에는 SK텔레콤과 ‘T 청소년 안심서비스’를 출시, ‘깨끗한 인터넷 환경 지킴이’이라는 설립 취지를 이어받아 이제는 건전한 청소년 모바일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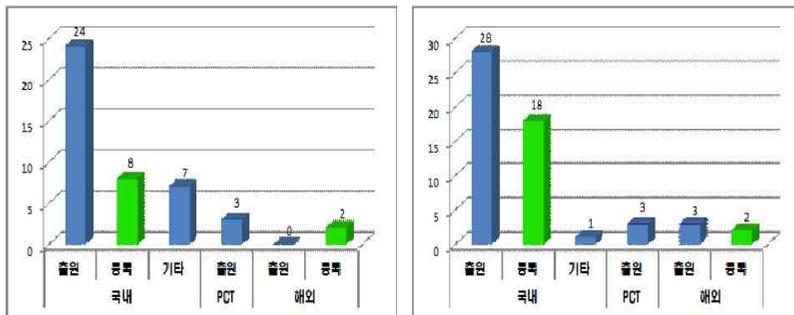
## 라. 특허전담부서 설립과 운영

플러스기술은 2010년 단순 관리나 행정 위주의 지적재산권 업무를 업무 기능별 전문화로 개선하고자 ‘법무 담당의 시스템관리 전반 책임제’, ‘연구개발 인력 상시 협력체계 보완’으로 전환하여 지적재산권 조직 재정비(6명, 임원 2명 포함)와 발명 분야 적재적소 대리인 증원

에 따른 효율적인 지적재산 네트워크 구축 및 연구개발 몰입 환경을 조성하여 특허 경영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마.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

직무발명보상제도 시행 이전      직무발명보상제도 시행 이후  
 (기준 : 2009년 상반기까지)      [기준 : 2012년 상반기(06.30.까지)]  
 (단위 : 건)      (단위 : 건)



### ※ 범례

- 등록 : 여기에서 '등록'은 해당년도 출원 건에 대한 직무발명보상 제도 시행 이전(2009년 상반기)까지의 등록된 건임
- 기타 : 거절결정, 소멸 등 출원과 등록 외의 상태를 말함
- 해외 출원 건은 1건에 대한 진입국가의 수와 관계없이 1건으로 하며, 등록은 진입국가별임

## 바. 특허교육 실적

### 1) 반기별 외부전문기관 전파 교육 시행

법무 담당과 연구개발 인력(프로젝트매니저 겸임)은 반기별 '명세서 작성법', '선행기술 조사 방법' 등 외부 전문기관의 이수 자료를 중심

으로 전문적인 지식 전파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출원 전 명세서 검토

법무 담당과 (대표)발명자는 지적재산권 시스템 체계화 및 ‘강한 특허’ 확보 전략의 목적으로 출원 전 특허출원서의 형식적 및 실질적인 요건(특히, 제3자의 모방을 조장하는 청구항 유무 등)에 대하여 명세서 검토서를 작성한 후 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 3) 채용 시 직무발명보상규정 설명

채용 근로자 대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대하여 안내 및 설명을 한 후 ‘서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 사. 직무발명제도 보상금 지급규정

플러스기술은 2009년 사업을 위한 기술 개발 관점을 발명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보호 및 연구개발 성과물의 권리화로 인한 발명자 개인의 자부심 향상, 직무 의욕 고취와 더불어 시장보호를 위한 직무발명보상제를 제정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규정 제15조(보상금의 지급)에 따라 ‘출원’, ‘등록’, ‘실시 및 처분’, ‘출원유보’ 보상금으로 구분하여 반기별로 시행(보상금 기준 아래의 표 참고)하고 있으며, 직무발명심사 시 직무발명심의의뢰서 중심의 형식적인 평가가 아닌 (대표)발명자의 기술 개요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병행하여 발명자와의 ‘Win-Win’구도의 실질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1) 출원, 등록 보상금

등급	평가 점수	국내				해외		
		특허 출원	특허 등록	실용신안 출원	실용신안 등록	PCT 출원	특허 출원	특허 등록
1등급	80점 이상	50	85	30	5	50	50	85
2등급	70점 이상	45	80	25	5	45	45	80
~	~	~	~	~	~	~	~	~
6등급	40점 미만	25	60	5	5	25	25	60

(단위 : 만원)

## 2) 실시/처분 보상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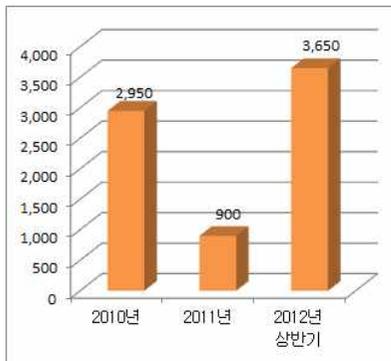
순이익	보상금 산정
5천만원 까지	기준금액 x 15% ± 경영평가
1억원 이상	(기준금액 x 5% ± 경영평가) + 300만원

(단위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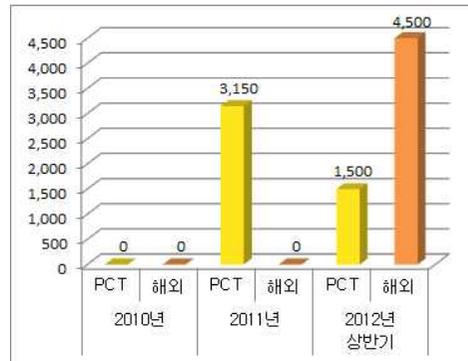
## 사. 직무발명제도 보상실적 및 사례

### 1) 년도별 출원 보상 현황

국내(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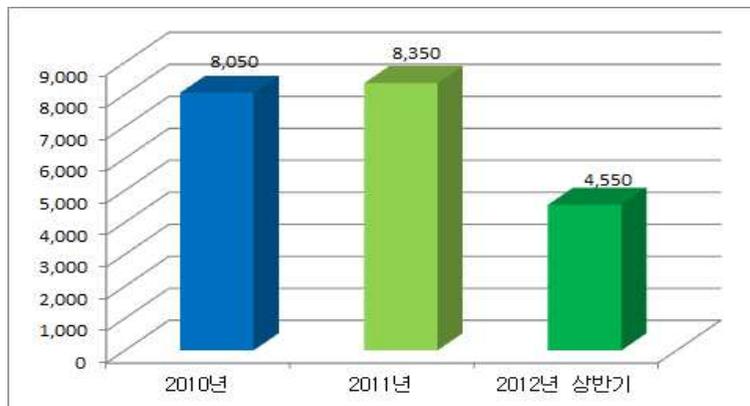


해외(단위 : 천원)



### 2) 년도별 국내 등록 보상 현황

(단위 : 천원)



### 3) 직무발명 우수 사례

2004년 06월 매년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의 증가와 더불어 과도한 IP 공유기 사용자에 따른 트래픽 증가, 망 부하,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저하 등을 선견지명 하여 '단말인증서비스'의 단독 개발과 제품

보호 중심의 원천 특허를 출원하였으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2009년 하반기 직무발명보상규정 제정 및 시행한 이래 사업 기반의 품질 강화된 원천 특허(등록번호 10-0960152)를 포함한 국내·외 시장보호 중심의 10여 건 특허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 분야 담당 연구개발 인력의 장기근속(이직 없음)과 회사 성장 기반을 다지는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동반성장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제공과 더불어 BVAS(Broadband Value Added Service) 사업 분야의 선도적 사업영역 및 지속적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 성장에 기여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 아. 직무발명제도의 운영효과 및 매출의 변화

### 1) 직무발명제도 운영의 효과

#### 가) 발명 주체에 대한 인식의 Turning Point 제공

직무발명보상 시행 이후 연구개발 인력이 아닌 사업부서 임직원들에게 ‘발명은 특정한 사람만이 아닌 본인도 할 수 있다는 인식의 Turning Point 제공’역할이 되었습니다.

#### 나) 대화의 질(質) 향상 및 직무발명 의욕 고취

아이디어 발상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시행과 직무발명보상심사 시(대표)발명자의 기술 개요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병행을 통하여 대화의 질(質)이 향상되었으며, 실질적인 직무발명보상에 따라 직무발명의 의욕 고취와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을 안정적 유지 및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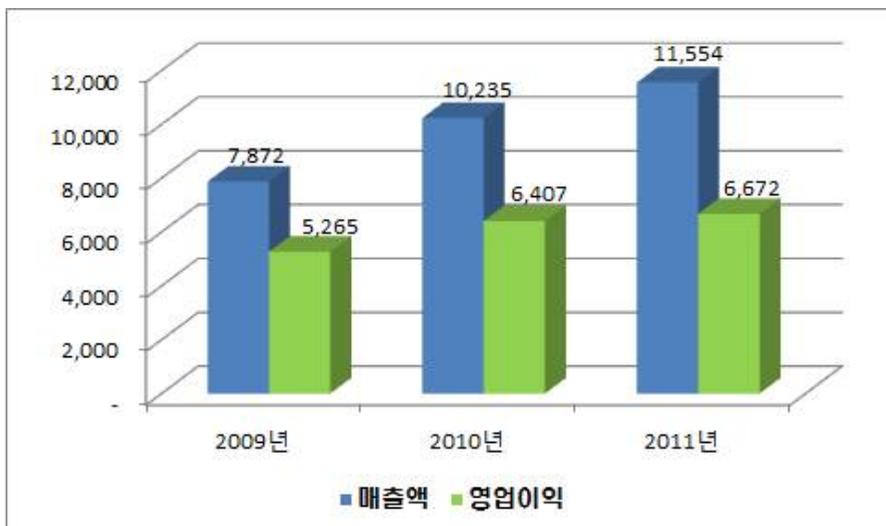
다) 사업 분야의 지속적 경쟁 우위 확보

선출원한 특허의 가치요소 분석을 통한 다양한 응용, 보조 또는 회피 특허를 발굴 및 출원하여 시장보호 중심의 권리를 지향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 매출의 변화

실질적이며 효율적인 직무발명제도 운영 결과 응용 기술을 활용한 신사업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권리를 인정해 줌으로써 직무발명의 동기 부여와 사업부서 임직원의 비즈니스 모델 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기존 서비스의 품질 강화 뿐 아니라 지속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신사업 개척을 이루어 지속적인 매출 및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주)코아옵틱스

### 가. 기업개요



본사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152번길 40,  
첨단벤처밸리 205호(441-813)

홈페이지 : [coreoptix.co.kr](http://coreoptix.co.kr)

설립일 : 2006년 9월 1일

대표이사 : 정윤정

주생산품 : 중/소/대형 LCD BLU 프리즘시트, 마스터롤

직무발명 도입년도 : 2008년

주요연혁 : 2006.09 (주)코아옵틱스 법인설립

(군포시 당정동 SK벤처움)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초정밀기술연구소)

2006.10 ISO9001 품질인증,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

2007.03 유상증자(삼성물산:증자 후 자본금 15.4억원)

- 2007.11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협약 (중소기업청)  
2008.01 산업원천 전략기술개발사업 협약 (지식경제부)  
2008.06 유상증자 (산업은행:증자 후 자본금 17.6억원)  
2008.07 회사이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지방산업  
1단지內)  
2008.12 국가연구개발 100대 우수연구성과 선정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표창)  
2009.03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등록 (지식경제부)  
유망중소기업 인증 (한국산업은행)  
2009.06 CPV태양광모듈개발 과제 협약 (KIST)  
2009.10 유상증자 (JAFCO:증자 후 자본금 22.6억원)  
2010.04 병역특례업체 선정 (대전충남지방병무청)  
2010.07 경기중소기업인상 수상 (경기지방중소기업청)  
2010.09 녹색기술인증 (지식경제부)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지사)  
2010.11 2010 IT이노베이션 대상 지식경제부 장관상  
수상 (지식경제부)  
2010.12 제2공장 증설 (충남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  
2011.06 유상증자 (증자 후 자본금 32.6억원)  
2011.07 고도기술기업인증 - 조세감면결정(기획재정부)  
2011.09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 지정(지식경제부)  
2011.11 중소기업키우기 프로그램 시범업체 선정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2011.12 경기녹색산업대상 제조기술부문 우수상  
(경기도)  
2012.01 Deloitte Technology Fast 500 Asia  
Pacific 선정

- 2012.02 아산공장 준공
- 2012.03 프리보드 신규지정 승인
- 2012.04 ISO14001 품질인증
- 2012.05 지역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  
(2012 글로벌 IP스타기업) 선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중소기업청)  
시트생산라인 증설  
(월 생산능력 1,500,000m<sup>2</sup>)
- 2012.06 국제회계기준(IFRS) 및 ERP 도입
- 2012.10 프리즘시트 양산 승인
- 2012.11 첨단기술,제품확인서(지식경제부)  
고용창출우수기업 인증(충청남도)

## 나. 주요제품

코아옵틱스가 보유한 대면적 미세패턴공정기술(Large Area Micro Patterning Technology)은 기계가공을 통하여 넓은 면적의 평판 또는 롤금형의 표면에 미세패턴을 가공하는 기계공학의 Precision Engineering 분야로서, 그 동안 선진국이 세계시장을 리드하고 있었으며, 기술개발의 난이도가 매우 높은 고도기술입니다.

코아옵틱스의 대면적 미세패턴공정기술의 국산화는 LCD의 핵심부품인 프리즘시트의 수입 대체를 실현시켰고 원천기술 보유국으로서 위상을 높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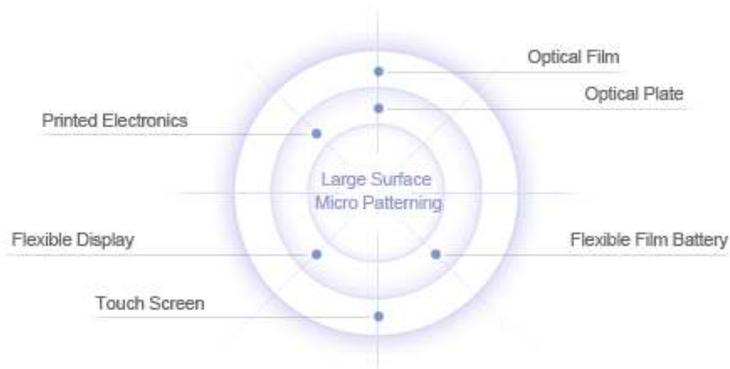


[ 마스터롤 제조공정 ]



[ 프리즘시트 생산라인 ]

대면적 미세패턴공정기술을 적용한 세계 최장폭 마스터롤 제조기술은 세계 최광폭의 프리즘시트 원단을 생산하는 세계속의 광학시트 전문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광폭광학필름의 수요는 국내 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LCD, OLED 등의 Display의 대형화를 중심으로 산업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향 후 장비투자 및 기술연구개발과 함께 인쇄전자산업(Printed Electronics), 태양광에너지산업(Solar panel back sheet), 의료기기 산업(Medical Film)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다. 회사구성 및 특허보유 현황

### 1) 회사구성 및 특허보유현황

코아옵틱스의 특허 전담조직은 2008년에 신설되었으며, 현재 총 7명으로 구성되어 발명유도 및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특허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2006년 설립된 코아옵틱스는 2008년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 및 기술력의 국내화를 위한 중앙연구소 설립 이후 연구개발의 동기부여를 위해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코아옵틱스의 종업원이 창작한 발명을 보호, 장려하여 종업원의 직무에 관한 연구개발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로 인하여 창출된 지식재산권을 합리적으로 관리·활용함을 목적으로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코아옵틱스는 총 인원이 70명으로 작지만 강한 벤처기업으로 25% 이상의 인력이 연구개발에 몰두하는 엔지니어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에게 충분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2008년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였고, 특허출원이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국내출원	국내등록	비 고
2006		1	
2007		1	
2008	1	1	
2009		2	
2010		4	
2011		2	
2012		2	
합 계	1	13	

## 2) 특허교육 실적

코아옵틱스에서는 2008년부터 특허팀을 주관으로 자체 월례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온라인특허교육은 물론 년 1회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외부강사(변리사)를 초청하여 직무발명제도의 운영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라. 직무발명 보상실적 및 보상사례

### 1)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규정

등 급	특 허				실 용	디자인
	출 원		등 록			
	국내	해외	국내	해외		
S등급	30 만원	25 만원	100 만원	80 만원	15 만원	10 만원
A등급	20 만원	15 만원	80 만원	50 만원		
B등급	10 만원	5 만원	30 만원	20 만원		

### 2)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실적

구 분	특허출원 및 등록보상금	비 고
2006		
2007		
2008		
2009	1,000,000	
2010		
2011	1,000,000	
2012	2,000,000	
합 계	4,000,000	

## 마. 직무발명제도의 운영효과 및 매출의 변화

### 1) 기술개발의 촉진

코아옵틱스는 2008년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제정한 이후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간 매출액의 23% 이상(2011년 기준)을 연구개발비에 투자하는 기술기업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업무과정에서 종업원이 창작한 발명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종업원의 직무에 관한 연구개발 의용을 고취시키면서, 회사와 종업원이 윈윈하는 기술개발의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 2) 우수한 인재의 유출방지

코아옵틱스는 2012년 현재 7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18명(26%)이 연구개발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스터롤, 프리즘시트 등을 개발, 제조함에 따라 연구개발인력의 중요성은 다른 제조기업에 비하여 높습니다. 직무발명제도는 이러한 연구개발 인력의 확보 및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2년 기준으로 연구개발인력의 이직률은 5%(1명 이직)로 매우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진행함에 있어서 직무발명보상 제도가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 3) 매출의 변화

코아옵틱스는 2011년 이전 마스터롤의 매출의존도가 거의 대부분이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2월 프리즘시트 아산공장을 준공한 후 자체 개발한 마스터롤로 광학필름 샘플을 제작하였고, 최근 고객사 주문을 받아 TV에 들어가는 복합시트용 제품부터 양산을 시작했으며, 중국 디스플레이 패널업체들이 대형 LCD 물량을 늘려 이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입니다. 2013년에는 마스터롤은 물론프리즘시트 매출력이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 (주)두산에코비즈넷

### 가. 기업개요



본사주소 : 강원도 춘천시 소양강로 56 바이오프라자 4층

홈페이지 : [www.ecobiznet.com](http://www.ecobiznet.com)

설립일 : 2000년 4월 15일

대표이사 : 유재성

주생산품 : 미생물제제 제조업 및 환경안전경영컨설팅

직무발명 도입년도 : 2008년

주요연혁 : 1991년 두산그룹환경전담조직, 두산기술원  
환경기술연구팀 발족

2000년 (주)두산에코비즈넷 설립, 두산그룹 환경안전경영  
컨설팅 수행

2003년 말레이시아 조호주와 환경 및 바이오분야 협력  
MOU 체결

- 2004년 말레이시아 UTM 대학과 바이오분야 MOU 체결
- 2006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2007년 ISO9001:2000 인증
- 2008년 INNOBIZ 인증
- 2009년 벤처기업 인증, 강원도 농업기술원과 바이오분야 MOU 체결
- 2010년 우수벤처기업 수상, 새만금 수질개선 아이디어 공모 표창장 수상
- 2011년 강원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강원 IP스타기업 인증  
강원 10대 발명 장려상, 강원도 R&D 우수성과 발표회 대상
- 2012년 중국 홍청바이오와 중국합자사 설립

## 나. 주요 제품



<수산양식/축산/농업용 미생물제제>



<유용미생물 자가배양시스템>

지속가능한 유기농과 깨끗한 환경을 추구하는 (주)두산에코비즈넷은 환경기술과 생물공학기술을 바탕으로 수산양식, 축산, 농업분야의 미생물제제 및 기능성물질을 생산하는 친환경기업입니다. 특히 환경정화능력이 우수한 광합성균을 고농도 순수 대량배양 할 수 있는 특허기술과 배양기 제작, 담체고정화, 농축냉동, 동결건조 등의 응용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차별화된 기술로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광합성균을 이용한 호소수질정화 및 저질악취 제거기술(B&P system)을 개발하여 생태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자가배양이 가능한 고품질의 유용미생물 제품군(자가배양시스템)을 전국농업기술센터에 보급하여 농가소득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두산에코비즈넷은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세계 속의 우량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 다. 특허전담부서의 설립과 운영

(주)두산에코비즈넷은 연구개발팀 내 지식재산권 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담인력은 특허와 관련된 사내외 교육

등을 필수적으로 이수한 전문인력으로 구성되며, 아이디어 회의를 통한 특허기술발굴에서부터 특허등록까지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주)두산에코비즈넷은 2006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후 연구결과물의 기술보호와 권리화를 위하여 지식재산권 확보 및 제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직무발명제도 내부규정인 특별포상제를 제정(2008년 5월 1일)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직무발명제도는 특허전담인력 뿐만 아니라 전 임직원의 자유로운 참여유도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 ① 지식재산권의 정량적 성과보다는 정성적인 성과 유도
- ② 내부 구성원들의 기술개발의지 향상
- ③ 내부 기술력 향상 및 제품 업그레이드

## 라.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

직무발명제도 도입을 전후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건 수는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2006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의한 본격적인 지식재산권 관리와 2008년 직무발명제도 도입에 의한 적절한 보상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2012년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8년 직무발명제도 도입 전(좌)과 도입 후(우)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건 수 변화>

## 마. 특허교육 실적

(주)두산에코비즈넷의 특허전담인력은 매년 특허관련 사업과 교육에 참여하여 전담인력으로써의 능력함양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로 4년째 한국발명진흥회와 춘천시청이 주관하는 IP-BANK 사업에 참여하여 신사업에 대한 특허·기술정보 분석 자료를 제공받아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지식재산권 확보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 직원의 발명의식 고취를 위하여 연중 수시로

변리사 또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허 상식교육과 TRIZ(트리즈, 창의적 문제 해결기법)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쉽게 발명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 바. 직무발명제도 보상실적 및 사례

### － 직무발명제도 보상금 지급규정

직무발명제도 내부규정인 특별포상제에 따른 보상금 지급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허 출원에 대한 포상은 등급에 관계없이 일괄 지급되나, 특허 등록에 대한 포상은 국내와 해외로 구분하되 그 기술적 성과, 사업적 기대성과, 시기 적절성 등을 평가하여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직무발명제도의 보상범위는 기술 분야인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만 한정되나, 추후 비기술 분야로 분류된 디자인과 상표로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허 출원포상	A 등급	B 등급	C 등급
국내 출원 포상금(원)		100,000	
해외 출원 포상금(원)		100,000	

특허 등록포상	A 등급	B 등급	C 등급
국내 등록 포상금(원)	500,000	300,000	200,000
해외 등록 포상금(원)	800,000	500,000	300,000

### － 직무발명제도 보상실적 및 사례

직무발명제도 내부규정인 특별포상제가 제정(2008년 5월 1일)된 이후의 보상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 12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고, 현재도 출원 또는 등록된 많은 특허가 보상을 위한 심의를 기

다리고 있습니다.

보상 년도	출원 보상금(원)	등록 보상금(원)
2008년	700,000	
2009년	300,000	600,000
2010년	1,100,000	300,000
2011년	900,000	
2012년 현재	200,000	300,000
총 합	3,200,000	1,500,000
보상금 총 합	4,700,000	

#### － 우수 직무발명 사례

기존 제품의 단점보완 및 업그레이드를 위해 진행된 정부과제 수행을 통해 제품군을 구성하는 품목 중 일부를 개발한 뒤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의 경쟁사 출현으로 자칫 매출에 타격을 유발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다수의 수위계약을 체결하여 매출 신장은 물론 신규 매출 창출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① 특허명 : 신규의 로도박터 스페로이테스 균주와 그 균주의 배양 방법 및 그 균주를 함유하는 유기비료(특허 제 10-2010-0090755호)
- ② 관련 제품명 : DS-PSB(자가배양 종균)
- ③ 주요 매출처 :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 ④ 주요 매출액 : 약 5억원

## 사. 직무발명제도 운영효과 및 매출의 변화

### - 내부 경쟁력 강화

흔히 지식재산권은 연구개발팀 및 마케팅팀의 전유물로 여기기 쉬우나,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한 이후 실제 보상은 전 직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시행되므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지를 고취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각자의 본업에서 발명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여 지식재산권화 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내부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 매출의 변화

(주)두산에코비즈넷의 제품군은 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제품들로 구성되며 이러한 제품들은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더욱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제품들이 정부 및 기관 사업의 일환으로 제품별 특징을 대상으로 구매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특허기술로 신뢰를 받음으로써 경쟁제품보다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이는 매출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 기업 이미지 향상

현재까지의 직무발명제도는 주로 정부 및 내부과제를 통해 도출된 신기술을 보호하고,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되므로 매출에 대한 기여는 크지 않지만, 대외적으로 (주)두산에코비즈넷을 기술력이 있는 우량기업으로 인식시켰다는 점에서 그 효과는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미래시장에서 이러한 노력은 반드시 매출 신장으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하며, 전 제품의 지식재산권화를 목표로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 ❖ (주)세종파마텍

### 가. 기업개요



본사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 402번길 63 (우: 403-030)

홈페이지 : [www.sjpm.com](http://www.sjpm.com)

설립일 : 1989년 4월 1일

대표이사 : 이원우

주생산품 : 제약장비 제조 및 수출 - 정제압축성형기/자동캡슐충진기/  
자동코팅시스템/고속믹서기/캡슐중량측정기/유동충전조기

직무발명 도입년도 : 2010년

주요연혁 : 2012년 2월 “IR 52 장영실상” 수상(캡슐중량측정기)\_  
과학기술부 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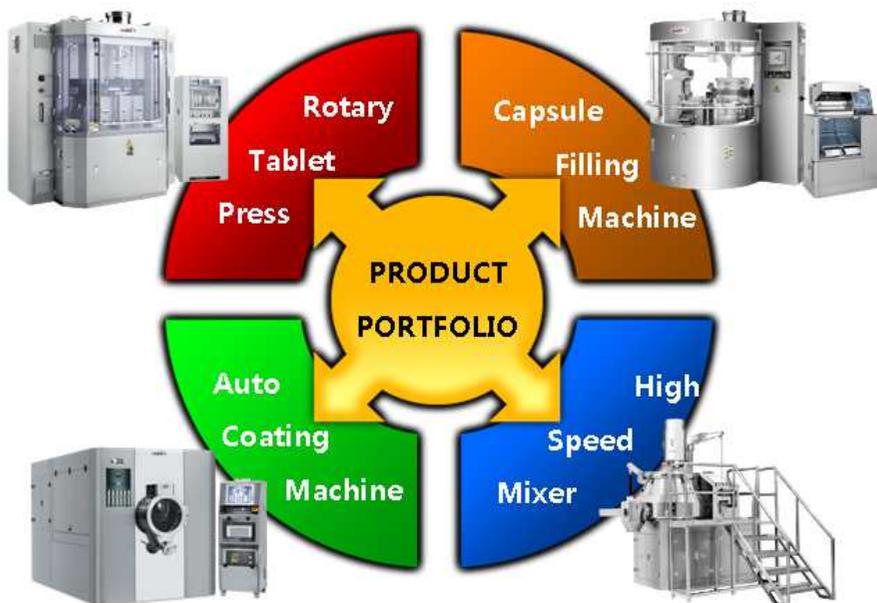
2011년 11월 비전기업 인증획득\_인천광역시

2010년 12월 2010년 매출액 309억 달성

2010년 12월 해외 에이전트 50여개 운영

2008년 06월 우량중소기업 및 기보 A+Member 선정  
2007년 11월 무역의날 2000만달러 수출의 탑 수상  
대통령, 산자부 장관 표창  
2006년 10월 기술혁신중소기업 인증 획득(INNO-BIZ)  
2005년 07월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인증) 획득  
2001년 03월 (주)세종파마텍으로 사명 변경  
1999년 03월 캡슐충진기 유럽품질인증 규격  
CE-MARK 획득  
1998년 11월 ISO 9001(품질경영인증) 획득  
1989년 04월 설립(전신 세종기계공업)

## 나. 주요 제품에 대한 설명



세종과마텍은 1989년 설립 이래, 국내 제약기계 산업의 선두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기술개발과 제품화를 통해 우수한 제약기계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0년 기준, 매출액은 309억원 수준이며, 해외수출액은 254억원으로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수출기업입니다. ※2011년(실적):289억원, 2012년(전망): 330억원

주요제품은 제약원재료의 직접적인 가공의 필수장비인 정제기(타정), 충전기(분말캡슐충진), 코팅기(표면가공), 믹서기(약재혼합), 캡슐중량측정기(중량측정/선별), 유동층건조기(혼합약재의 건조 가공)입니다.

세종과마텍은 20여년 이상의 제약기계 산업에서의 노하우와 끊임 없는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통한 고객만족으로 “제약기계 분야의 Global Top 3”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다. 특허전담부서 설립과 운영

특허전략팀은 2010년 발족되어 총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운영, 지식재산권관리, 특허전략 수립/실행, 특허지원사업 등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지적재산권관리 위임인(특허법인)을 지정운영하여 산업재산권 확보, 법적분쟁 대응에 대한 수준을 높이고, 특허교육/컨설팅을 통해 질적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 라.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

세종파마텍은 발명자의 권리보호, 정당한 보상을 통한 발명의 촉진, 산업재산권 증대, 해외 경쟁기업과의 분쟁예방을 기본취지로 2010년 특허전담부서 신설 및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특허출원 및 등록실적이 크게 향상되어, 2012년 11월 현재 특허출원 57건, 특허등록29건, 디자인출원 20건, 디자인등록 17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2년 11월16 기준

[단위: 건]

년도	특허		디자인		합계		비고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2012년	7	15	3		10	15	
2011년	20	2		4	20	6	
2010년	13	1	4	4	17	5	
2009년	4		4	3	8	3	
2008년	2	3	3		5	3	
2007년	2	1		4	2	5	
2006년	1	2	4		5	2	
2005년	4	2	1	1	5	3	
2004년		1			0	1	
2003년		1			0	1	
2002년	1	1			1	1	
2001년	2				2	0	
2000년	1			1	1	1	
1999년			1		1	0	
<b>합 계</b>	<b>57</b>	<b>29</b>	<b>20</b>	<b>17</b>	<b>77</b>	<b>46</b>	

## 마. 특허교육 실적

세종과마텍은 2010년 국제특허 분쟁예방 컨설팅(지식재산보호협회)을 시작으로 2011년 국제특허 분쟁예방 컨설팅(지식재산보호협회), 2011년 IP-R&D 특허전략지원사업(R&D특허센터), 2012년 IP-R&D 전략지원사업\_IP융복합과제(R&D특허센터)의 4건의 특허관련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사업에 발명자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특허조사/핵심특허도출/회피설계안 마련 등의 과정에서 참여한 변리사 및 특허전문위원과의 교류를 통하여 효과적인 특허교육을 진행할 수 있

었습니다.

또한, 외부 지적재산권 위임인인 특허법인을 통하여 반기마다 특허 관련 교육을 오프라인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바. 직무발명제도 보상금 지급규정 및 보상실적

직무발명제도의 프로세스는 직무발명신고(발명자, 임직원) → 자체 검증(선행기술자료 조사, 부서장 의견서) → 직무발명신고서 접수(특허전략팀) → 발명의 심사(심의위원회, 외부자문위원 포함) → 승계여부 및 평가(심의위원회) → 심사결과 통지(심의위원회,보상등급 통보) → 재심신청(발명자) → 산업재산권 출원(특허전략팀) → 권리인계/승계(양도증) → 보상(단계에 따른 보상금 지급)과정이 제정되어 있으며 매 발명건 마다 성실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규정은 출원보상과 등록보상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 ① 보상규정

- 출원보상: 특허 50,000(해외 70,000), 실용신안 50,000,  
디자인 30,000
- 등록보상: 특허 100,000(해외 200,000), 실용신안 50,000,  
디자인 30,000

### ② 보상실적

- 출원보상: 총 1,550,000
- 등록보상: 총 1,300,000
- 기타보상(발명장려): 총 2,590,000

## 사. 직무발명제도의 운영효과 및 매출의 변화 등

세종파마텍의 직무발명제도는 특허지원사업, 임직원 특허교육과 병행되어 우수한 성과를 이루고 있으며 제약산업의 불황과 국제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2010년 309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2011년에는 유럽발 금융위기, 북아프리카의 정치적 불안, 국내 제약기업에 대한 정책적 규제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290억원에 이르는 매출액을 달성하였으며, 2012년에는 330억원 정도의 매출액이 전망되며, 이는 매년 5%가 넘는 과감한 기술투자(R&D투자)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과에는 직무발명제도를 통한 산업재산권 확보와 기술경쟁력 강화가 한 몫을 했다고 자부할 있으며, 특히‘국제전시회’(독일,미국,인도,일본,중국)참가전 대응/회피설계를 통해 국제 특허분쟁 Risk를 감소시키고, 해외시장 출시에 필요한 특허권리를 선점하여 해외 우수기업들과 자웅을 겨룰 수 있었으며, 신제품의 시장선점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직무발명의 심의평가에서도 기술의 독창성/실시가능성/기술의 수명/긴급성(시의성)/독점성 등 평가의 다양성을 기하고, 양산화시에 예상되는 경제적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중소기업에서 꼭 필요한 수익성과 시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아. 직무발명제도 개선 및 발전 방향

현재까지는 발명자가 연구원들로 국한된 점이 있어 발명자의 폭을 확대하고 제도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여건상 출원/등록 보상금의 규모가 다소 적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의 규모도 현실적인 수준과 보편적인 인식 수준, 권고안에 맞추어 시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자. 향후 포부

임직원들의 창의적인 사고와 발명이 회사의 기술경쟁력,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임직원과 회사 모두 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수출기업으로서 세계 우수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사업환경은 기술가치가 곧 경쟁력입니다. 이를 실천할 강력한 수단으로서 직무발명제도가 한 몫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앞으로도 세종파마텍의 임직원은 직무발명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고 성숙/발전시켜 기술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며 기술한국, 강한 한국 실현에 중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 (주)코아비스

### 가. 기업개요



본사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공단로 117

홈페이지 : [www.coavis.com](http://www.coavis.com)

설립일 : 1994년 12월

대표이사 : 이인영

주생산품 : 연료펌프모듈 및 펌프

직무발명 도입년도 : 2006년

주요연혁 : 1994.12 회사설립(한국 자동차 연료시스템)

2000.05 QS-9000 / ISO9001인증

2001.10 우수중소기업 국무총리상 수상

2002.06 우수 협력업체 GMDAT 대표이사상 수상

2003.03 ISO14001 시스템인증

2004.05 충청남도 기업인 대회 경영대상 수상

2005.05 ISO/TS16949 시스템인증

2006.07 GM 신규 글로벌 프로그램 연료펌프모듈 주요  
공급업체로 선정

- 2006.10 미국사무소 설립 (Detroit)
- 2007.06 멕시코 법인 설립 (Monterrey)
- 2010.03 (주)코아비스 상호 변경
- 2010.11 무역의 날 7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 2011.03 2010년도 GM글로벌 우수 협력업체상 수상 (SOY상)
- 2011.12 INN0-BIZ 업체선정

## 나. 주요 제품에 대한 설명

전세계에서 연료펌프의 독자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생산 및 판매하는 국가는 아래의 그림1과 같이 5개 국가밖에 없으며, 그 중 하나가 대한민국이며, 대한민국은 코아비스가 있기 때문에 독자적 생산 국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림1]

생산 제품의 종류는 연료펌프모듈, 연료펌프, 포지션센서, 액추에이터, DC모터, DRIVER 등이 있으며 주요 생산품인 연료펌프모듈의 기능과 종류 등은 아래의 그림2와 같습니다.

### 연료펌프모듈 (F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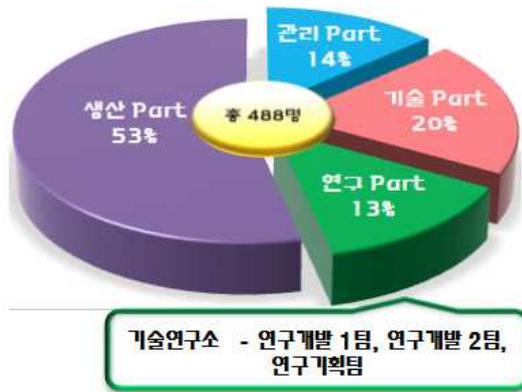
- 기능**
- 연료탱크 내부의 연료를 엔진으로 송출
  - 시스템 압력 조절
  - 연료탱크 내부의 연료량 지시
  - Low fuel warning 기능
  - 연료여과 기능
  - 정전기 방지 기능

- 종류**
- Typical
  - Intank filter
  - Saddle
  - Bracket
  - LPG
  - Motorcycle

[그림2]

## 다. 특허전담부서 설립과 운영

주요 조직 중 연구파트의 기술연구소는 3개의 팀을 두고 있으며 그 중 연구기획 지적재산팀은 연구기획팀 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성원을 살펴보면, 전담인력3명 및 겸임인력1명을 두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특허사무소 및 선행기술조사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문적으로 특허업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림3]

## 라.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

사업 초반에는 특허출원율이 저조하였으나 글로벌과 더불어 사업이 성장하고 2011년 직무보상을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중소기업으로서는 적지 않은 수의 특허권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특허를 빼놓고는 비즈니스를 생각하기 어려운 시대이며 주요 성공적인 경영전략의 하나로 활용해야 한다는 경영진의 인식 전환에 따라 앞으로도 특허출원은 강화할 것입니다.

총 누적\_2012.10.31

		Application	Registration	Remark
Patent	Korea	18	58	Co-director (1)/(TSA)
	USA	22	3	-
	China	19	2	-
	EU	1	-	-
	Germany	9	1	-
	Italy	1	-	-
	Japan	-	1	-
	Brazil	4	-	-
	India	1	-	-
	PCT	-	-	-
<b>Total</b>	<b>75</b>	<b>65</b>	<b>-</b>	
Utility	-	-	-	
Design	-	1	Impeller	
Trademark	4	10	Korea(3), China(7)	

## 마. 특허교육 실적

임직원의 특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2010년 하반기부터 선행기술조사, 특허출원의 이해 등 총 6회 내부교육 및 외부강사 초빙세미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중 자사의 직무발명규정 개정 전에 앞서 2011년 5월 26일 한국발명진흥회의 직무발명교육을 진행하여 직무보상규정 표준모델을 이해하고 궁금한 점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특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발명의 날을 지정하여 우수발명왕상 시상 및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직무발명제도 운영의 발전과 더불어 아이디어제안 접수 시 내부 심의 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출원진행여부를 결정하며 출원결정 된 건에 대하여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사무소의 담당명세사와 발명자미팅을 진행하는 등 업무가 연계되도록 내부지침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 바. 직무발명제도 보상금 지급규정

코아비스의 직무발명 보상금 규정은 2011년 개정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출원보상 : 출원 건당 10만원 (공동 발명의 경우 발명자 전원에게 총액의 N분의 1 지급)
- ② 등록보상 : 등록 건당 50만원 (공동 발명의 경우 발명자 전원에게 총액의 N분의 1 지급)
- ③ 실시보상 : 발명자의 신청시 기준으로 해당 제품의 순이익, 특허의 기여도 등을 직무발명심의위원회가 최종결정하여 보상 (단, 최고보상액의 한도는 3,000만원 내)

## 사. 직무발명제도 보상실적 및 사례

### 1) 보상실적

보상 년도	보상 월	출원 보상금	등록 보상금	기타 보상금
2011년	7월	700,000	13,488,000	-
	8월	200,000	-	24,000,000
	9월	300,000	500,000	-
	10월	400,000	2,000,000	-
	12월	100,000	1,000,000	-
	소계	1,700,000	16,988,000	24,000,000
2012년	1월	-	1,000,000	-
	2월	200,000	500,000	-
	4월	-	1,500,000	-
	5월	200,000	2,500,000	-
	6월	200,000	-	-
	7월	-	1,000,000	-
	8월	100,000	-	-
	소계	700,000	6,500,000	-
합		2,400,000	23,488,000	24,000,000
보상금 총 합		49,888,000		

### 2) 보상금 지급사례

특허정보원 K-PEG을 통하여 특허의 가치를 평가받은 국내 등록특허 제10-0695934호“지르터 펌프의 유체토출구조”, 제10-0590169호 “자동차용 연료펌프의 임펠러구조”등 2건은 연료펌프에 관한 발명으로 종합평가등급의 최상위인 S등급 및 A2등급으로 그 권리의 우수함을 인정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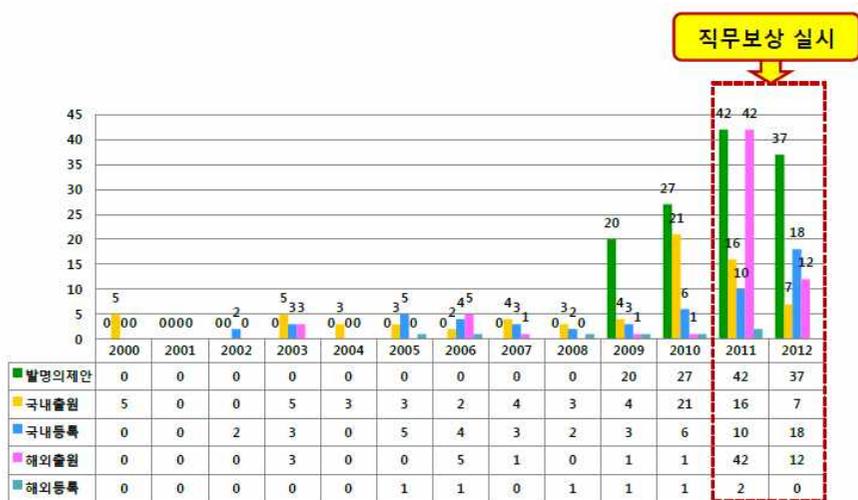
실제로 상위 직무발명은 고객사로부터의 수주확보 및 Grobal진출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향후 연료펌프 분야는 무한한 사업개발가능성을 안고 있는 분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아. 직무발명제도의 운영효과 및 매출의 변화

### 1) 직무 발명의 증가

제도 시행과 더불어 엔지니어들의 특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보다 발명의 제안 건 수가 급격하게 증가 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사 특허의 질적, 양적 성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안된 아이디어는 명세사와 발명자의 직접 미팅을 통해 정확한 출원 초안 작성 이 되고, OA등에 대한 정확한 대응과 불필요 특허의 포기, 중요특허의 해외 출원, 자사의 특허 사용 모니터링 등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특허가 확보 될 수 있도록 업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림4]



### 2) 사업 수주 시 특허 활동 병행

고객이 제시하는 장벽특허를 신속하게 회피하고 진출 시장에 특허를 먼저 출원 하는 노력을 통해 2012년 600억원 규모의 신규수주를 하였으며, 이는 2014년부터 자사의 매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자사의 매출은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직무 보상을 실시한 2011을 기준으로 2012에는 약 300억원의 매출 증가와 200억 이상의 수출 증가가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하며 2014년에는 매출 2,000억원을 돌파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등의 동종 후발 업체 등에 일부 기술과 특허의 라이선스를 허여함으로써 지식재산을 통한 로열티 수입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 (주)에이비엠그린텍

### 가. 기업개요



본사주소 :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470 에이스하이테크21 2002호

홈페이지 : [www.abmarch.co.kr](http://www.abmarch.co.kr)

설립일 : 1992년 6월 9일

대표이사 : 김병철

주생산품 : 지붕용 아치패널, 태양광조명장치, 자동승하강 등기구

직무발명 도입년도 : 2010년

주요연혁 : 1992. 06 설립

2005. 10 건설신기술활용실적 우수 대통령 표창

2006. 05 발명의 날 산업자원부장관 표창

2007. 06 부산시 선도기업 선정

2010. 11 지역에너지절약 유공자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상 수상

2011. 06 2011년 우리지역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  
(지식경제부)

2012. 02 우수IP혁신상 수상

2012. 06 Global IP Star 기업선정 / 2012년 우리지역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

2012. 08 중소기업진흥공단 으뜸기업 선정

## 나. 주요제품

에이비엠그린텍은 1992년 회사를 설립, 기여와 봉사라는 기업이념으로 기술경영과 사회적 기업의 문화를 가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입니다. 아치패널과 아트그린 패널이라는 차별화된 공법으로 신기술(국토해양부 건설신기술 제358호)을 개발하여 지붕패널시장을 선도해 왔으며, 2005년부터는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문제와 화석연료 고갈을 대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술연구소를 설립하고 집중적인 미래 대체에너지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후발주자로 시작하였으나 단기간내 해외 우수기술과의 격차를 좁혀왔으며 명실공히 국내 동분야 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2013년을 해외 수출 원년의 해로 설정하고 해외영업부를 중심으로 단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사업 분야는 아치패널분야와 친환경 태양광 조명분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외 고천정용 자동승하강 조명 등기구, 태양광발전시공, 태양열시공 분야가 있습니다.

### ① 아치패널분야

아치형 지붕패널이라는 특수한 시공법으로서 국내 최초 아치패널 분야의 기계를 국산화하고 단열, 실내마감, 기계화에 의한 안전결합시공 공법의 개발로 특허 및 신기술 인증을 받았습니다. 특히 기존공법을 개선하여 공기단축, 시공비 절감, 작업자의 안전고려, 미려한 외관으로 건축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현재는 시대적 변화가 요구하는 단열 1등급과 잦은 이상기후(태풍, 폭우, 폭설)에 대해 구조적 안전 내성을 가지며, 이에 부가하여 지붕에 태양광발전을 일체화할 수 있는 SUPER GREEN PANEL을 개발하

여 시장에서 기술적 경쟁우위를 확보하였습니다.

② 친환경 태양광 조명분야

친환경 태양광조명은 신재생에너지 중 유일하게 전기로 변환하지 않고 태양빛을 실내에 유입시켜 조명으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도시환경이 고층화, 고밀도화 됨에 따라 창문이 없는 밀폐 공간, 지하 공간 등 자연광을 받을 수 없는 공간이 늘면서 친환경 태양광조명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태양광조명은 CO2 저감과 에너지절약이라는 직접적 효과뿐만 아니라 생산성 및 학습능력 향상, 건강증진 등 부가적인 기능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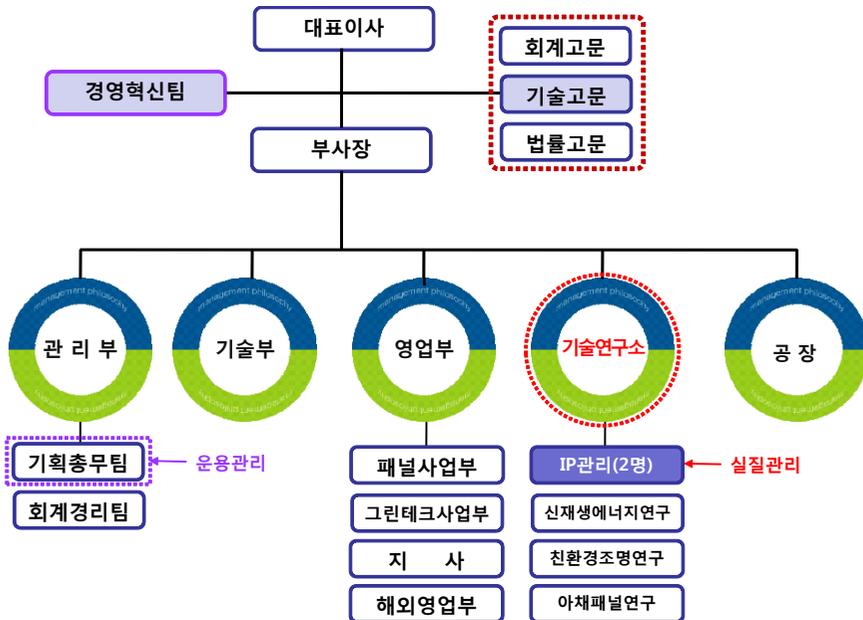
【시공사례】



다. 특허전담부서의 설립과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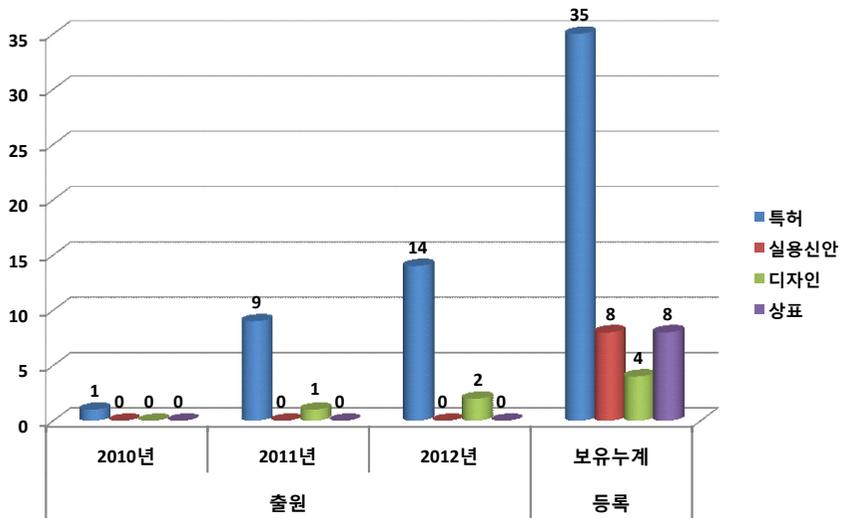
당사에는 특허전담조직은 설립되지 않았으며, 전체적인 운용관리는 기획총무팀의 1명이, 실질적 관리 및 활용은 기술연구소의 2명의 겸

임인력에 의해 연구개발 기획, 특허취득, 사후관리 및 활용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1.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실적

기업 설립 개별적인 발명제안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0년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당사 내의 기술적 패러다임의 변화와 맞대어져 제안 건수 및 그에 따른 지식재산권 출원도 크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주)에이비엠그린텍이 현재까지 국내 특허출원 21건, 해외 3건, 등록특허 35건의 실적을 보유하고, 기타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는 각 8건, 4건, 8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2. 특허교육 실적

(주)에이비엠그린텍에서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인식을 제고하고 명세서 작성, 특허침해 대응방법 인지 및 특허정보검색 및 활용법 인지를 위해 매년 3~4건의 외부 전문기관 또는 협회 등에 교육 참가를 시키거나 전문가를 본사로 초청하여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디어의 지식재산권화를 위한 제안자 미팅 시에도 참석한 경영자, 자문변리사와 제안자가 특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함으로써 효과적인 특허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의 심판 및 소송사건에 대해 담당변리사와 발명자간에 토의를 통해 특허사건의 심각성을 고취시킴으로써 특허활성화 및 특허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 라. 직무발명보상실적 및 보상사례

## 1.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실적

현재는 제안된 아이디어의 지적재산권화를 통해 등록 시에 보상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2010년 제도도입 후 현재까지 7건의 등록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 ① 보상기준

- 등록보상 : 최대 1,000,000원
- 기타보상 : 최대 3,000,000원

### ② 보상실적

- 등록보상 : 총 4,900,000원
- 기타보상 : 총 5,000,000원

## 2.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사례

에이비엠그린텍의 직무발명 보상 지급사례는 현재는 등록특허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으나 출원보상 및 사후보상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외에도 특허외의 실적(제안상, 인증, 대외수상, 논문, R&D 수주, 프로젝트 완수 등)에 대한 별도의 포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마. 직무발명제도의 운영효과 및 매출의 변화

직무발명제도 운영의 가장 큰 효과는 전 직원들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점이며, 또한 직무발명 제안의 활성화 및 특허출원 수가 증가되는 것이다.

아울러 에이비엠그린텍의 기술보호는 물론 관련 시장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 (주)마미로봇

### 가. 기업개요



본사주소 :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762 아이테크 757호

홈페이지 : [www.mamirobot.co.kr](http://www.mamirobot.co.kr)

설립일 : 2005.12

대표이사 : 장승락

주생산품 : 로봇청소기

직무발명 도입년도 : 2010년

주요연혁 : 2005.12 법인 설립

2006.11 신기술벤처인증 획득/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07.11 2007 창업대전 우수기업부문 수상

2009.09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인증 획득

2010.09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국무총리상 수상

- 2010.11 제11회 경기벤처기업인의 날  
중소기업청장상 수상
- 2012.06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 인증 획득
- 2012.07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 수상  
일자리 우수기업 수상  
KOTRA 창립 50주년 사장 표창
- 2012.09 행복한 중소기업 일자리 으뜸기업
- 2012.10 2012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본상 수상

## 나. 주요 제품에 대한 설명



마미로봇은 대한민국 주거환경에 적합한 카페트 / 장판 동시 청소가 가능하고 물걸레 청소가 가능한 로봇청소기를 개발하여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로봇청소기가 국내에서 처음 사용되었을 당시 미국의 아이로봇은 카페트 청소에 효과적인 회전솔 청소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미로봇은 대한민국의 마루/장판에서는 진공청소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진공청소가 가능한 로봇청소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

였습니다. 지금은 진공 청소와 회전솔 청소가 모두 가능한 로봇청소기를 개발하여 국내와 해외(일본, 유럽, 중국, 대만, 홍콩)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기술적으로 완전하지 않으면서 비용이 많이 드는, 카메라를 이용한 위치 인식 기술 대신 SSW(거미의 집짓는 방식)을 알고리즘으로 구현하여 효과적인 청소 알고리즘을 구현하였습니다.



국내의 장판/마루 환경에서 없어서는 안 될 물걸레 청소 기능을 겸비하였고, 물걸레 장착방법에 대한 고유의 특허(특허 10-0747086)를 보유하여 가장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물걸레 기능을 구비하였습니다.

기존의 로봇청소기는 자동 충전장치에서 신호를 보내면 이를 본체에서 감지하여 충전위치를 찾아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동 충전장치에 여러 개의 센서를 부착하여 거리에 따라 신호를 보내어 본체의 위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나 난반사나 장애물 등에 따라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워 충전이 제대로 되지 않

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동 충전장치와 본체간의 양방향 송수신에 의해 정확한 위치 파악 및 자동 항법장치를 통한 미세 제어를 함으로써 원활한 자동 충전을 구현하였습니다.

배터리의 급속 충전 회로에 있어서는 과충전 방지와 급속충전 제어로 배터리 수명 단축과 과충전에 따른 화재 발생 등의 단점을 제거하고 빠른 시간내에 배터리를 안전하여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배터리 성능을 향상시키는 회로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시간 충전, 2시간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흡입력을 강화하고 위생적인 사용을 위하여 1회용 필터를 이용하는 것도 마미로봇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다. 특허전담부서 설립과 운영

본사의 기술연소는 2006년 설립되어, 이상을 전무를 필두로 하드웨어팀 2명, 기구설계팀 2명, 선행연구팀 2명, 제품생산 관련팀 3명 등 총 10명의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라.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

특 허 명		권리권자 (출원인)	등록일 (출원일)	적 용 제 품
등 록	로봇청소기	(주)마미로봇	'07.02.08	전제품
	로봇청소기 (흡입가이드)	(주)마미로봇	'07.02.08	전제품
	로봇청소기 (진공흡입)	(주)마미로봇	'07.02.08	전제품
	로봇청소기의 먼지통	(주)마미로봇	'07.06.18	전제품
	로봇청소기 부직포걸레 장착구조	(주)마미로봇	'07.08.01	전제품
	물걸레가 구비된 로봇청소기	(주)마미로봇	'08.07.21	전제품
	로봇청소기 회전걸레 장착구조	(주)마미로봇	'08.10.15	
	로봇 청소기 (낙하센서)	(주)마미로봇	'09.11.04	전제품
	로봇청소기 (걸레지지판)	(주)마미로봇	'06.05.10	
	진공청소기 먼지흡입구조	(주)마미로봇	'08.05.13	
	휴대형 핸드청소기	(주)마미로봇	'11.04.28	짜루
	휴대형 핸드청소기	(주)마미로봇	'11.04.28	짜루
	(미국) 로봇청소기 흡입가이드	(주)마미로봇	10.01.26	전제품
	(중국) 로봇청소기 흡입가이드	(주)마미로봇	10.06.16	전제품
	(일본) 로봇청소기 흡입가이드	(주)마미로봇	11.06.24	전제품
출 원	휴대형 진공청소기	(주)마미로봇	'09.06.02	
	흡착가이드를 구비한 로봇청소기	(주)마미로봇	'09.10.12	
	로봇 청소기 (백크로를 이용한 물걸레부착)	(주)마미로봇	'09.10.14	
	휴대형 핸드청소기	(주)마미로봇	'09.10.23	
	자동청소시스템및자동청소시스템의제어방법	(주)마미로봇	'10.02.03	
	로봇청소기 (물걸레내장)	(주)마미로봇	'10.06.21	
	로봇청소기 (높낮이조절)	(주)마미로봇	'10.06.21	
	핸디형 진공청소기	(주)마미로봇	'10.07.02	
	덕트용 로봇 청소기	(주)마미로봇	'10.07.30	
	자동청소장치및자동청소장치의제어방법	(주)마미로봇	'10.08.16	
	자동청소장치및자동청소장치의제어방법	(주)마미로봇	'10.12.03	
	무선청소기용 다기능 충전기	(주)마미로봇	'10.12.20	
	로봇 청소기 (평탄한 바닥 청소)	(주)마미로봇	'11.01.28	
	로봇 청소기 (다다미전용 흡입구)	(주)마미로봇	'11.04.12	
	청소로봇의 청소방법	(주)마미로봇	'11.04.13	

## 마. 특허교육 실적

아미로봇에서는 매월 1회 담당 변리사와 연구원간 특허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미팅을 진행함으로써 특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 뿐 아니라 모든 임직원들로부터 수시로 아이디어를 제안 받아 원가 절감, 기술력 향상 등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 바. 직무발명제도 보상금 지급규정

## 사. 직무발명제도 보상실적 및 사례

운영실적 : 특허 4건, 디자인 3건, 상표 3건 등 제안 및 발명, 출원  
 보상실적 : 출원 13건 / 등록 2건 등

보상 년도	보상 월	출원 보상금	등록 보상금	기타 보상금
2009년				
	소계			
2010년	6/30	200,000원(2건)		
	7/2	200,000원(2건)		
	7/10	100,000원(1건)		
	7/28	200,000원(2건)		
	소계	700,000원		
2011년				
	소계			
2012년	4/2	1,000,000원(5건)	100,000원(1건)	50,000원
	4/3		100,000원(1건)	
	6/28			
	9/20			
	소계		1,000,000원	
합		1,700,000	200,000원	50,000원
보상금 총 합		1,950,000원		

## 아. 직무발명제도의 운영효과 및 매출의 변화 등

2010년 직무발명제도의 시행 이후 2011년 신제품 출시에 맞춰 많은 직무발명이 있었고, 그로 인해 마미로봇의 2011년 매출액은 2010년 대비 약 180%의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연구원들의 이직율이 높았던 것에 비해, 직무발명제도 실시 이후 현재까지 이직자가 한명도 없을 만큼 연구원들이 열정을 갖고 제품 개발과 기술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전담 연구원 뿐 아니라 모든 임직원들에게도 좋은 아이디어에 대한 포상이 제공되고 있어 제품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계속 제안되고 있고,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 ✦ (주)리얼허브

### 가. 기업개요



본사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59 퍼스트인센텀 802호

홈페이지 : [www.realhub.co.kr](http://www.realhub.co.kr)

설립일 : 2008년 8월 25일

대표이사 : 이강석

주생산품 : 네트워크 영상 통합운영 소프트웨어

직무발명 도입년도 : 2010년

주요연혁 : 2008. 08 법인설립

2008. 12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09. 03 벤처기업 확인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보증기업)

2009. 06 ISO 9001:2008 인증

2010. 04 GS(Good Software)인증 획득

2010. 11 2010대한민국소프트웨어기술대상  
우수상 수상

2010. 12 조달 우수제품지정 (지정번호 2010211)

2011. 11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2011. 12 INNO-BIZ업체 선정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확인

## 나. 주요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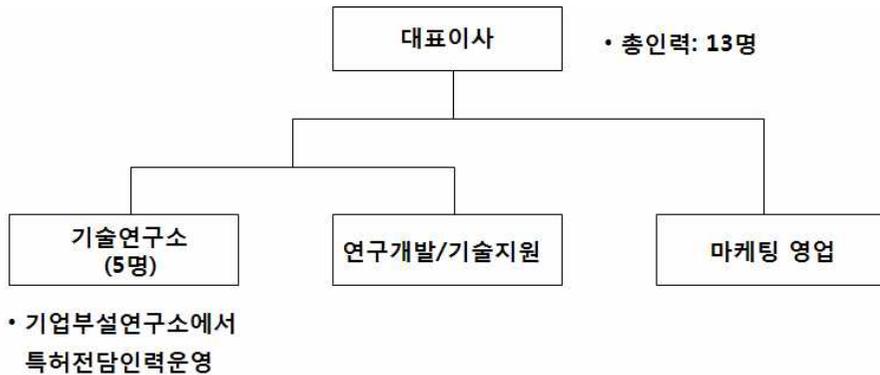
(주)리얼허브는 네트워크 영상 통합 운영 시스템 부문에 우수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추고, 국내외 IP Network-based Video Surveillance 시장의 선도적인 기업이 되기 위하여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사례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인프라의 발전 및 트렌드의 변화에 발맞추어, 최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갖춘 제품 및 솔루션을 공급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다. 특허전담부서의 설립과 운영

(주)리얼허브의 특허 전담조직은 2011년 기업부설연구소가 신설되면서 해당 업무를 맡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에 접목되는 신기술들을 문서로 정리해두고 지적 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직무발명제도를 도입

하였습니다.

2011년 발명한 성과를 바탕으로 핵심 특허 발명자 2명을 미국 라스베가스 전시회에 모든 경비 일체 및 체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 특허출원 및 등록실적

(주)리얼허브 기업부설연구소(소장 하성욱)가 신설된 이후 기업부설 연구소에서는 한 달에 특허 하나를 목표로 꾸준히 특허를 출원 중에 있습니다.

현재 특허 출원 실적은 14건에, 특허 등록 실적은 11건으로 연구소 개설 이후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고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 특허교육 실적

(주)리얼허브에서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수시로 변리사 및 특허청 심사관을 초청하여 오프라인 특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시 변리사와 발명자간 특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

함으로써 효과적인 특허교육을 받고 있고, 특허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특허 활성화 및 특허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 라. 직무발명 보상실적 및 보상사례

발명의 제안, 특허 등의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시보상 등에 관련하여 (주)리얼허브에서는 매년 1회 특허 제안 누적 개수에 따라 2인의 해외 전시회 전체 경비 지원으로 2011년 보상 기준에 따라 2인 2012년 미국 라스베가스 전시회 경비 일체(720만원) 및 체제비(260만원)를 지원하였습니다.

## 마. 직무발명제도의 운영효과 및 매출의 변화

직무발명제도의 운영효과는 직무발명 제안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고, 더불어 (주)리얼허브의 기술보호는 물론 관련 시장에 관한 독점적인 지위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 신기술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 특허를 우회하는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며, 이를 문서로 남기고 저작권을 등록하는 순환 구조를 갖게 되었고, 단순한 통합관계 소프트웨어에서 신기술 적용으로 인해 업계의 신기술을 소개하고 선도하는 기술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 관공서 통합관계 시장의 40%이상을 차지하며 매년 20% 이상의 매출액 상승을 이루고 있습니다.

## 바. 우수 직무발명 사례

(주)리얼허브에서는 핵심 특허(제10-0977417호 저장된 동영상의 고속 검색 방법) 등록에 따른 중소기업청 기업부설연구소 과제로 선정되어 2년간 4억원을 지원 받게 되었고, 개발 소프트웨어의 GS 공인 인증과 매출 증대로 “한국발명진흥회의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확인서”를 획득하였습니다.



단일 소프트웨어인 NVR 모니터링에 적용된 요소 기술에 대해서 5 가지 특허를 취득하였습니다.

- 1) 제10-1084598호 영상 입력 기기의 네트워크 과부하 판별장치 및 네트워크 과부하 판별 방법
- 2) 제10-1119842호 원격 비디오 시스템의 소스 장애 판별 장치, 방법 및 상기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내장된 기록 매체
- 3) 제10-1119843호 원격 비디오 시스템의 성능 장애 판별 장치 및 방법
- 4) 제10-1119846호 원격 비디오 시스템의 저장 공간 장애 판별

장치 및 방법

- 5) 제10-1119848호 영상 입력 기기의 접속 장애 판별 장치 및 장애 판별 방법



# 부 록



## 직무발명 모델규정

### ○○주식회사 직무발명보상규정

2000년 00월 00일 제정

####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원·직원 등(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의 발명을 보호·장려하여 종업원등의 직무에 관한 연구개발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로 인하여 창출된 지식재산권을 합리적으로 관리·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자유발명”이란 다음 각목에 열거하는 것으로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발명을 말한다.

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

나.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발명

다.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 발명

4.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등을 말한다.
5. “출원유보”란 회사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것을 말한다.
6. “특허관리전담부서”란 회사에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기획·조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 (권리의 승계)

- ① 회사는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 및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회사가 승계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 또는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종업원등이 종업원등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경우는 종업원등이 갖는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해당지분을 회사가 승계한다. 다만,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회사가 승계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 또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장 발명의 신고 및 승계여부의 통지

### 제4조 (발명의 신고)

① 종업원등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완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속 부서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을 거쳐 특허관리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한 발명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발명신고서
2.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양도증
3.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발명의 내용 설명서
4.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선행기술 조사서(국내출원 이외의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은 즉시 그 발명신고서에 수령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 후 사본을 발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 (심의 및 승계여부의 통지)

①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발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고, 심의결과를 토대로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직무발명심의위원회는 별표 1의 발명평가기준에 따라 심의를 하여야 한다.

- ②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결정한다.
- ③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승계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발명신고서가 제출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과 소속 부서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 (승계시점 등)

- ①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이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그 때부터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 ②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이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가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 제7조 (이의신청)

- ① 발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관리전담부서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서면으로 그 이유를 기재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2.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②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한 발명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와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의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③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그 이유와 함께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과 소속 부서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발명진흥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 제8조 (자유발명의 양도)

① 발명자는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발명이라도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회사에 양도할 수 있다.

② 발명자가 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조에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이 경우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은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규정에 의해 발명을 승계한 경우, 본 규정에 의해 정해지는 보상기준을 준용한다.

### 제3장 직무발명심의위원회

#### 제9조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설치)

회사는 직무발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 및 간사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특허관리전담부서의 임직원 및 소속부서장, 종업원 대표 중에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임명하고,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이 하며, 간사는 특허관리전담부서의 직원으로 한다.

#### 제11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발명의 직무발명 해당 여부
2.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

3. 직무발명의 출원(PCT국제출원 또는 각국 해외출원 포함), 등록 여부
4.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수용 여부
5.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출원의 취하·포기, 권리의 유지·포기 등의 여부
6.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도·실시허여·기술이전 또는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7.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양수 여부
8.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지급기준·산정방식·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
9. 본 규정의 개정 및 적용에 관한 사항
10. 기타 대표이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③ 위원이 해당 발명의 발명자인 경우, 그 위원은 그 발명에 관한 심의에서 제척되며 위원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위원장은 직무발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명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⑤ 간사는 회의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4장 출원 및 비용부담

### 제13조 (출원 등)

- ① 회사가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직무발명(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유발명의 양도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회사 명의로 지체 없이 특허출원을 하며,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은 그 사실을 발명자와 소속 부서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그 직무발명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출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발명자와 소속 부서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직무발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원의 취하·포기, 권리의 유지·포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4조 (비용부담)

- ① 회사는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 및 권리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회사 외부로부터 연구비 등 비용을 지원 받은 과제에 결과물로 도출된 발명의 경우 당해 과제 관련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등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과 권리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및 사무에 관해서는 그 발명에 대한 지분 및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 제5장 보 상

### 제15조 (보상금의 지급)

- ① 회사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출원보상금 : 직무발명이 출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
  2. 등록보상금 : 직무발명이 등록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
  3. 실시·처분보상금 :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직접실시, 양도 또는 실시허여 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
  4. 출원유보보상금 :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을 유보하는 경우 및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을 취하·포기할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보상금에 상당하는 승진·승급·연수 등의 비금전적 보상을 고려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기준·산정방식·지급시기 등의 세부사항은 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을 고려하여

직무발명보상금 산정기준세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6조 (공동발명자의 보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있어서 그 직무발명의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서에 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제17조 (퇴직 또는 사망시의 보상)**

- ① 발명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도 발명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 ② 퇴직자 또는 그 상속인은 주소 및 연락처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상속인이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은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권리가 특허법 제33조 제1항의 본문규정에 의한 이유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보 칙**

**제19조 (비밀유지의무)**

- ① 발명자, 발명과 관계된 자, 위원회의 위원은 회사가 그 직무 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회사가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당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발명과 관계된 자, 위원회의 위원은 발명자가 그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제1및 제2항의 규정은 발명자, 발명과 관계된 자, 위원회의 위원이 회사를 퇴직한 후에도 적용한다.

#### **제20조 (출원의 제한 등)**

발명자는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을 때까지 그 직무발명을 자기명의로 출원하거나,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 (손해배상)**

발명자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발명자는 그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22조 (협력의무)**

발명자는 출원·심사·심판·소송·기타 처분 또는 실시를 위하여 회사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다만, 회사

를 상대로 다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퇴직 등 후의 취급)**

종업원이 퇴직 등을 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급은 이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시기)**

이 규정은 20〇〇.〇〇.〇〇.부터 종업원등의 신고가 있는 직무 발명에 대해서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의 제정 전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된 권리로 본다.

[별표 1] 발명평가기준

평가요소 (점수)	평가기준(점수)			
	낮음(5)	보통(10)	높음(15)	매우 높음(20)
기술성(20)	낮음(5)	보통(10)	높음(15)	매우 높음(20)
실시가능성 (20)	실시가능성 낮음(5)	부분적인 보완 후 실시가능 (10)	즉시 실시 가능하지만 추가적인 시설 필요(15)	즉시 실시 가능 (20)
독창성(20)	직무상 당연히 착상 가능(5)	문헌, 기타자료에 의해 착상가능(10)	다른 발명을 독창적으로 개량·고안( 15)	극히 독창적이며, 고도의 기술(20)
경제적가치 (20)	연간 순수익 1,000만원 미만(5)	연간 순수익이 5,000만원 미만(10)	연간 순수익이 1억원 미만(15)	연간순수익 이 1억원 이상 (20)
독점성(10)	회사 외부의 제3자 발명을 이용해야만 실시 가능(이용발명) (3)	공유권리자 및 무상의 실시권자 존재 (6)		완전한 독점 가능 (10)
기술의수명 (10)	1년 미만 (3)	5년 미만 (6)	10년 미만 (8)	10년 이상 (10)
1. 평가점수의 합계가 45점 이상인 경우: 승계 및 국내출원 2. 평가점수의 합계가 70점 이상인 경우: 승계 및 PCT국제출원 (또는 각국 해외출원)				

## ○○주식회사 직무발명보상금 산정기준세칙

제정 2000. 00. 00.

###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직무발명보상규정 제15조 제3항에 근거하여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산정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출원보상금)

회사는 각 직무발명의 출원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원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1. 특허: 00만원
2. 실용신안: 00만원
3. 디자인: 00만원

### 제 3 조 (등록보상금)

① 회사는 직무발명이 등록되었을 때 각 권리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1. 특허권: 00만원
2. 실용신안권: 00만원
3. 디자인권: 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제 4 조 (실시·처분보상금)**

- ① 회사는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직무발명에 대한 실시·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처분보상금은 당해 발명의 실시·처분으로 회사에 수익이 발생하는 동안 계속 지급하되, 매년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 5 조 (출원유보보상금)**

회사는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을 유보하거나 출원을 취하·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각 보상금의 합계액을 출원유보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제 6 조 (보상금의 조정 및 비금전적 보상)**

- ① 직무발명심의위원회는 직무발명의 경위와 내용, 발명자의 회사에 대한 기여도, 실시·처분수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직무발명심의위원회는 발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금에 상당하는 승진·승급·연수 등의 비금전적 보상을 고려할 수 있다.

**부 칙(2000. 00. 00.)**

이 세칙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실시·처분보상금 산정기준(예)

구분	산정기준	보상금 산정
회사 자기 (직접) 실시	순이익 1,000만원 이하	기준금액 x 30%
	순이익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기준금액 x 20% + 100만원
	순이익 5,000만원 초과	기준금액 x 10% + 200만원
양도 또는 실시 허여	양도금액 또는 실시료 수입액 1,000만원 이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x 30%
	양도금액 또는 실시료 수입액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 1,000만원) x 20% + 300 만원
	양도금액 또는 실시료 수입액 5,000만원 초과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 5,000만원) x 10% + 1,100만원
<p>1. 순이익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한다. 순이익 = (총판매량 x 판매단가) - (제조원가 + 영업경비)</p> <p>2. 기준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한다. 기준금액 = 순이익 x 이용률(당해 제품에서 직무발명이 이용되는 비율)</p>		



[별지 제2호 서식]

양 도 증 (지분 표시)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등록번호)					지분율
양 도 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기타					
양 수 인	성 명	○○주식회사	대표이사		
	주 소				
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한 권리를 ○○주식회사 직무발명규정 제4조에 따라 ○○주식회사에 양도합니다.					
년    월    일					
○○주식회사 귀중					



[별지 제3호 서식]

<b>발명 설명서(명세서) -2</b>	
<b>3. 발명(고안) 의 상세한 설명</b>	<p><b>【발명의 구성】</b> 3.4 발명의 구성 및 작용 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p> <p>나) 기능 및 작용</p> <p>다) 실시예</p>
	<b>【발명의 효과】</b>
<b>4. 특허청구 범위</b>	<p>4.1 청구항1</p> <p>4.2 청구항2</p> <p>4.3 청구항3</p>

[별지 제4호 서식]

<b>선행기술 조사서</b>			
제출자 (발명자)		접수번호	
발명의 명칭		제출일자	
<b>1. 선행기술과의 대비</b>			
기존 특허 (제목, 특허번호, 출원일자)	본 발명 대비 신규성 (어떤 점이 새로운가?)	본 발명 대비 진보성 (청구범위가 어떻게 다른가?)	
<b>2. 관련자료(참고문헌, 학회지 등)</b>			
문헌명, 저자, 페이지 등	기술 요약	참고문헌과 비교시 본발명의 특징	

[별지 제5호 서식]

통지일자	
수령자	직위 :
	성명 : (인)

심사결과 통지서	
문서(접수) 번호	
수신(발명자)	
발명의 명칭	
제 목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사결과 통지
00 주식회사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규정 제5조에 따라 귀하의 발명에 대한 심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결 정 사 항	
1. 직무발명 여부	
2. 회사의 승계 여부	
3. 특허성의 등급결정	
4. 국내외 출원여부	
5. 출원시 심사청구여부	
6. 기타	
20    년    월    일 00주식회사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00주식회사 특허관리전담부서장 (인)	



[별지 제7호 서식]

<b>이의신청결정 통지서</b>	
문서번호	
수 신	
발명의 명칭	
제 목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이의신청결과 통지
<p>00 주식회사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규정 제7조에 따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p>	
<b>결 정 사 항</b>	
1. 신청 이유(요약)	
2. 결정 내용	
<p>20    년    월    일</p> <p>00주식회사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인)</p> <p>00주식회사 특허관리전담부서장 (인)</p>	

[별지 제8호 서식]

출원 통지서			
문서번호			
수 신			
발명의 명칭			
발 명 자			
<p>00 주식회사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규정 제13조에 따라 귀하의 발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출원여부 등을 통지합니다.</p>			
권리 내용			
출원 여부			
출원 일자		출원 번호	
미출원 이유			
<p>20    년    월    일 00주식회사 특허관리전담부서장 (인)</p>			
<p>첨부 : 출원명세서</p>			

## Q&A로 알아보는 직무발명제도

### ❖ 직무발명의 인정요건

#### ● 종업원이 할 수 있는 발명의 유형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종업원등이 할 수 있는 발명에는 ㉠**직무발명** 외에 ㉡종업원등의 직무와는 무관하지만 사용자등의 업무와는 관련성이 있는 발명인 ‘**업무발명**’과 ㉢종업원등의 직무 및 사용자등의 업무와 무관한 발명인 ‘**자유발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발명의 종류를 나누는 이유는 직무발명의 경우에만 사용자등에게 법정통상실시권이 인정되며 권리의 예약승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업무발명과 자유발명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무발명제도에 의해서 규율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발명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종업원등이 완성한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아닌지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종업원이 가능한 발명의 구분



제가 완성한 모든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회사가 이대리님에게 요구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완성한 발명이 직무발명입니다. 이대리님의 과거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도 직무발명이 됩니다. 회사의 업무와 전혀 무관한 발명이라면 직무발명이 아닌 자유발명입니다. 자유발명의 경우는 발명자가 자체적으로 특허출원하실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

자유발명



◎ 직무발명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종업원등이 완성한 발명이라고 해서 모두 직무발명인 것은 아닙니다. 직무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가. 종업원등의 직무에 관한 발명일 것

‘종업원등’이란 고용계약에 의해 타인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종업원 뿐만 아니라 법인의 임원, 공무원도 이에 해당됩니다. 상근과 비상근을 가리지 않으며 임시직원<sup>3)</sup>도 종업원에 해당하지만, 고용관계는 반드시 존재하여야 합니다.

‘직무’란 사용자등의 요구에 응해 업무수행을 담당하는 직책상의 임무를 말합니다.

나. 사용자등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발명일 것

‘사용자등’이란 일반적으로 회사를 말하지만, 정확하게는 타인을 고용하여 업무를 시키는 개인, 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합니다.

‘업무범위’란 사용자 등이 수행하는 사업범위를 말합니다. 법인의 경우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한 사업범위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넓게 해석하여 사업수행상 직접 관계가 있는 발명은 모두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

3) 이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편의상 ‘종업원등’을 ‘직원’으로, ‘사용자등’을 ‘회사’로 표현하겠습니다.

## 다.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

발명을 의도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직무발명은 성립하지만, 발명을 하는 것이 종업원등의 직무가 아닌 경우는 직무발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예: 일반사무직 직원이 한 발명).

한편,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라 함은 종업원등이 담당하는 직무의 내용과 책임범위로 보아 발명을 피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또는 기대되는 경우를 말합니다.<sup>4)</sup>

 <p><b>종업원의 발명일 것</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업원: 고용계약에 의해 타인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 종업원, 법인의 임원, 공무원을 지칭. 상근 비상근을 묻지 않으며 촉탁직원이나 임시직원도 포함하나 고용관계는 반드시 있어야 함</li> <li>• 직무: 사용자의 요구에 응해 업무수행을 담당하는 직책</li> </ul>
 <p><b>종업원의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할 것</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자: 타인을 고용하는 개인, 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지칭</li> <li>• 업무범위: 사용자가 수행하는 사업범위</li> <li>• 법인의 경우 사업범위는 정관을 기초로 해석</li> </ul>
 <p><b>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업원의 직무: 발명의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발명의 성립은 인정되나 발명을 하는 것이 종업원의 직무가 아닌 경우에는 직무발명이 아님</li> <li>•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 종업원의 직무는 현재의 직무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 내에서 과거에 수행한 직무도 포함</li> </ul>

4) 대법원 1991.12.27. 선고 91후1113 판결

● 사내창업자가 발명을 한 경우, 원 소속회사의 직무 발명이라고 할 수 있는가?

가. 사실관계

- 원고는 X회사이고, 피고는 Y1(회사)과 Y2(개인)이다.
- 피고 Y2는 X회사(원고)에 입사하여 Y1을 창업하였고 현재까지 X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 Y2는 2005년 10월에 X회사의 사내창업규정에 따라 Y1 회사를 설립하였고, 사내창업을 이유로 2005년 11월 30일부터 2008년 12월 26일까지 X회사를 휴직하였다.
- 2006년 3월 22일 Y2는 자신의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받았고, 2009. 03. 11. Y2는 Y1에게 위 특허를 양도하였으며, X회사는 Y1과 Y2를 상대로 특허권이전등록 등을 청구하였다.

나. 결론

직무발명에서의 ‘종업원 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 대한 노무제공의 사실관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피고인 Y2는 사내창업 휴직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았고, 위 휴직기간은 재직년수에도 산입되지 않으며, X회사는 위 기간 동안 Y2에게 실질적인 지휘 내지 명령권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의 특허는 X회사의 직무발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sup>5)</sup>

---

5) 대법원 2009. 11. 11. 선고 2009가합72372 판결

## ●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그 회사와 공동으로 완성한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가?

### 가. 사실관계

- 원고(X)는 피고 회사(Y1)에 입사하기 전에 피고 회사와 공동으로 고안을 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자이고, 공동피고인 Y1은 회사이며 Y2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 Y1 회사 및 Y2는 X에게 체인을 코팅하는 기계장치의 제작을 의뢰하고 Y1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계약하였다.
- X는 고안을 완성하고 Y1과 공동으로 실용신안등록을 받았다.
- X는 Y1 회사의 공장장으로 입사했고, 본인의 지분을 Y1 회사에 이전했지만, 그 후에 X는 Y1 회사를 퇴사하였다.
- X는 Y1 회사를 상대로 자신의 고안이 직무발명에 해당하고 그 고안이 Y1 회사에 승계되었으므로, Y1 및 Y2를 상대로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했다.

### 나.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고안이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발명된 것이므로 이 고안이 직무발명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물론, Y1 회사와 X사이에 기계장치의 개발의뢰 계약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고용계약이 아니었고, 그 후에 X가 Y1 회사에 입사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은 사후적으로 발생한 고용계약이므로 X의 입사 전에 완성된 발명을 Y1 회사에 대한 직무발명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sup>6)</sup>

- 통상적인 관리업무만을 수행한 사람이 특허출원서에 발명자로 기재된 경우에도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가?

#### 가.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Y)의 생산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며, 피고 Y는 주식회사이다.
- X는 부하직원들에게 이 사건 발명들에 대한 개발에 착수하도록 지시하고 그 기술개발의 진행 내용을 보고받았으며, 발명이 완성된 후에는 담당 기술자 등과 공동으로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출원의 발명자로 기재되었다.
- 이 사건 발명들이 등록된 후에 X는 피고 회사(Y)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 나. 결론

법원은 개발에 착수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생산팀장으로서 해야 할 통상적인 업무수행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을 뿐 특허발명에 대한 기여요소로 인정할 수 없으며, 기술개발과정에 대한 개별적인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하여 통상적인 지적사항을 언급하는데 그쳤을 뿐이고, 당면한 기술개발의 어려움을 타개할 만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X)는 이 사건 발명의 진정한 공동발명자라고 볼 수 없으며, 출원서에 발명자로 기재되었다고 할지라도 직무발명을 완성한

---

6)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가합2717 판결

자가 아니므로 피고 회사(Y)에 대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sup>7)</sup>

● 특허부서 직원이 발명신고서의 청구항을 수정하고 일부 도면 등을 수정하여 특허출원을 명확히 한 경우 공동 발명자라고 할 수 있는가?

가. 사실관계

- 원고(X)는 피고 회사(Y)의 특허부서에서 연구원 등의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며, 피고는 Y주식회사이다.
- Y회사에서 연구를 수행하던 발명자 A가 이 사건 발명을 직접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내용의 일부가 Y회사 특허부서를 거치면서 X에 의해 수정되었다.
- 그 후 이 사건 발명에 대하여 Y회사가 특허권을 취득하자 X는 피고 회사(Y)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결론

법원은 원고(X)가 이 사건 발명의 공동발명자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X가 실제 발명자로 추정된다고는 할 것이지만,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X는 단지 이 사건 발명의 특허출원업무의 진행과정에서 발명자 A의 동의없이 임의로 이 사건 양도증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것이므로 발명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만약 실제로 X가 이 사건 발명신고서의 청구항을 수정하고 일부 도면 등을 수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특허출원과 관련하여

7)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6나62159 판결

여 그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X를 이 사건 발명의 공동발명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X가 피고 회사(Y)를 상대로 한 직무발명보상금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sup>8)</sup>

● 행정업무만 담당하던 공무원이 발명에 참여한 경우, 직무 발명에 해당하는가?

가. 사실관계

- 원고(X)는 광역자치단체이며, 피고(Y)는 건설안전관리본부 시설국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다.
- 공무원인 Y와 공동고안자인 A는 이 사건 고안을 자유제안의 형식으로 원고(X)에 제안하여 포상을 받았고, 그 후 Y는 A와 함께 출원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았다.
- 한편, A는 Y와 상의 없이 원고(X)에게 직무발명 신고를 하였고, 원고(X)는 직무발명보상심의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고안을 승계하기로 의결하고, Y에게 Y의 실용신안권에 대한 지분을 이전하도록 요구하였다.
- Y가 원고(X)의 지시를 거부하자, 원고(X)는 Y를 상대로 실용신안권 지분 이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결론

법원은 해당 고안이 원고(X)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발명이기는 하나, 공무원 Y가 고안을 하게 된 행위가 Y의 직무범위에 속하는지

8)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4가합10788 판결

의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구체적인 판단은 Y의 직무수행 내지 직책을 참고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Y가 근무한 부서에서의 구체적인 업무는 대부분 민원, 행정관리업무였고, Y가 이 사건 고안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하거나 기술업무에 종사한 것이 아니었으며, Y와 A가 자신들의 비용으로 업무 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고안을 완성한 점, Y와 A가 위 고안과 관련된 분야에서 원고(X)로부터 업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은 적도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직무발명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즉, 법원은 Y가 담당한 직무내용과 책임범위로 보아 이 사건 고안을 피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또는 기대될 수 있는 경우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원고(X)의 지분이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별도의 규칙에 의해 권리를 승계하도록 규정하더라도 공무원의 직무를 벗어나는 발명은 직무발명이 아니므로 그 발명에 대해서는 권리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sup>9)</sup>

9)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가합9775 판결

## ❖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의 권리와 의무

### ● 발명을 완성한 종업원등이 가지는 권리와 의무는 무엇 인가요?

발명을 완성한 종업원등은 다양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발명을 완성시킨 종업원은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② 보상을 받을 권리 ③ 발명자 게재권 등의 권리를 가질 수 있고, ④ 직무발명 완성사실 통지의무 ⑤ 비밀유지의무 등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 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발명자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에 따라서, 완성된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시적으로 발명자인 종업원등에게 귀속됩니다.<sup>10)</sup>

#### 나. 보상을 받을 권리

종업원등이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 등을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 종업원등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sup>11)</sup>

---

10) 특허법 제33조 제1항

11)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보상에 대하여 회사와 직원간의 고용계약 또는 근무규정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 그 발명에 의하여 회사가 얻을 이익과 ㉡ 그 발명의 완성에 회사와 직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sup>12)</sup> 이러한 규정은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직원이 보상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 다. 발명자 게재권

직무발명을 완성시킨 직원은 특허출원, 출판, 논문 등의 문서에 발명자로서 이름이 게재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는 발명자로서 당연히 가지는 인격권의 일종으로서, 이를 위반한 상대방에 대하여 발명자료의 게재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 라. 직무발명 완성사실 통지의무

직무발명을 완성한 직원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의 직원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발명에 참여한 직원의 공동명의로 회사에 완성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sup>13)</sup> 이는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회사가 쉽게 파악하여 발명의 안정적인 승계와 기술유출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직무발명의 완성사실에 대한 통지가 인정되는 시점은 완성사실

12) 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

13) 발명진흥법 제12조

을 담은 문서가 회사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도달주의). 직원은 반드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서면 외에 전자문서(이메일, 전자결재 등)에 의한 통지도 문서로 인정됩니다.

이와 같이 문서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한 이유는 장래에 발생하게 될 수 있는 회사와 직원간의 분쟁에 있어서 증거를 명확히 남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마. 비밀유지의무

직원은 회사가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해당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가 해제됩니다.<sup>14)</sup>

만일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sup>15)</sup>

---

14) 발명진흥법 제19조

15) 발명진흥법 제58조



## ● 사용자등이 가지는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가요?

회사는 직원에게 급여, 연구시설, 연구지원, 기술전수, 교육, 기타 지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직원이 발명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를 갖지만 직원에게 소정의 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 가. 법정통상실시권

직무발명에 대하여 직원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을 받거나 직원으로부터 특허·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 등을 받은 경우, 회사는 그 특허 등에 대하여 법정통상실시권을 갖게 됩니다.<sup>16)</sup> 이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직원이 직무발명을 완성시킴에 있어서 회사가 일정한 기여를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법정의 권리입니다.

### 나. 예약승계를 통한 권리취득

회사는 직원이 앞으로 완성시킬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등을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을 직원과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을 예약승계계약이라고 하며, 직원이 회사에 입사할 때 고용계약서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예약승계계약을 맺음으로서 성립합니다.

그러나 직원의 발명 중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발명에 대하여 회사가 미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승계시키거나 회사를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

16)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정의 조항은 (해당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sup>17)</sup>

만약 직무발명이 회사와 고용관계가 없는 제삼자와 공동으로 완성된 경우에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회사가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 받으면 회사는 그 발명에 대하여 해당회사의 직원이 가지는 권리에 대한 지분을 갖게 됩니다.<sup>18)</sup>

#### 다. 동의할 수 있는 권리

직원이 특허권을 등록받은 경우, 회사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법정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직원은 특허권을 포기하거나 특허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회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sup>19)</sup>

#### 라.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여부 통지 의무

회사는 직무발명의 완성사실을 통지한 직원에게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의 승계여부를 문서로 회신해 주어야 합니다.<sup>20)</sup> 회사가 승계하기로 회신할 경우,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는 회사에 승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sup>21)</sup>

17) 발명진흥법 제10조 제3항

18) 발명진흥법 제14조

19) 특허법 제119조 제1항, 제136조 제7항

20) 발명진흥법 제13조 제1항

21) 발명진흥법 제13조 제2항

만약, 회사가 일정한 기간 내에 승계여부를 직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 회사는 그 발명에 대한 권리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발명을 한 직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 실시권을 가질 수 없게 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sup>22)</sup>

따라서, 직원이 직무발명에 대한 완성사실을 통지한 경우, 회사는 반드시 그에 대한 승계여부를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해당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겠다고 통지할 경우, 회사는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법정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있지만, 승계여부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실시권 조차도 종업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가질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 마. 정당한 보상을 할 의무

예약승계에 의하여 회사가 해당 직무발명을 승계받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sup>23)</sup>

또한 회사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뒤 출원을 하지 않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한 경우에도 해당 직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sup>24)</sup>

---

22) 발명진흥법 제13조 제3항

23)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24) 발명진흥법 제16조



## ❖ 예약승계규정

### ㉠ 예약승계규정이 없는 경우, 직원의 직무발명은 어떻게 취급되는가?

예약승계규정이 없는 경우, 권리의 승계여부는 종업원등과 사용자등간의 개별계약에 따라 처리되지만, 사용자등은 적어도 특허권 등에 대하여 법정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직원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지 않고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회사는 그 권리의 승계를 요구할 수는 없고 법정통상실시권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 가. 예약승계규정이 있는 경우의 취급

<b>승계의사 통지</b>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이내)	<b>不 승계의사 통지</b>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이내)	<b>승계여부 미통지</b>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이내)
▶ 사용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 ▶ 종업원 정당한 보상청구권 취득	▶ 사용자 무상의 통상실시권 취득 ▶ 종업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귀속	▶ 사용자: 종업원 동의하의 통상실시권 취득 ▶ 종업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귀속

#### 나. 예약승계규정이 없는 경우의 취급

<b>종업원 등의 양도의사 無</b>	<b>종업원 등의 양도의사 有</b> (사용자 등의 양수의자 有)
▶ 사용자 무상의 통상실시권 취득 ▶ 종업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귀속	▶ 사용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 ▶ 종업원 정당한 보상청구권 취득



● 구체적인 예약승계계약이 없더라도 회사의 직무발명제 안지침이 있었다면 예약승계규정으로 볼 수 있는가?

가. 사실관계

- 피고(Y)는 원고 회사(X)에 입사하여 2008년 퇴직하였다. Y는 X회사에 재직 중에 담당 업무에 관한 이 사건 특허를 자신의 명의로 출원하여 등록받았다.
- X회사는 Y와 직무발명에 관한 예약승계계약을 하지 않았고, Y의 입사 당시 고용계약서에도 관련된 내용이 없었다.
- X회사는 2000년부터 '회사는 해당 직무발명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직무발명에 관한 제권리를 승계한다'고 규정한 직무발명제안지침을 사규로 정하였다.
- X회사는 그 동안 종업원이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해 왔으며, Y에 대하여 Y가 취득한 이 사건 특허에 대한 지분이전을 청구하였다.

나. 결론

법원은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예약승계규정이 설정되는 경우에도 종업원 등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다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역시 명시적인 예약승계계약이나 고용계약서에 관련된 내용은 없었으나, 2000년부터 X회사는 직무발명제안지침을 만들어 시행하였고, 2003년부터 Y가 퇴사한 2008년까지 5년 이상 Y가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해 포상을 하였고, Y도 역시 자신이 완성한 대

부분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X회사에게 권리를 승계하였습니다. 따라서 양자 간에는 직무발명에 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다고 인정되었고, 이 사건 특허에 대한 Y의 지분을 X회사에 이전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sup>25)</sup>

## ● 직원이 완성한 모든 발명을 회사가 승계하기로 한 규정이 유효한가?

### 가. 사실관계

- 원고(X)는 광역자치단체이고 피고(Y)는 그 소속공무원이다.
- Y와 공동고안자인 A는 이 사건 고안을 자유제안의 형식으로 원고(X)에게 제안하여 포상을 받았고, 그 후 Y는 A와 공동으로 실용신안등록을 받았다.
- A는 Y와 상의 없이 원고(X)에게 직무발명 신고를 하였고, 원고(X)는 Y에게 Y의 실용신안권에 대한 지분을 이전하도록 요구하였으나, Y가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자 Y를 상대로 이 사건 실용신안권의 지분을 이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나. 결론

원고(X)의 공무원제안규칙 제28조에서 ‘시장이 공무원제안을 통한 발명이나 고안 등을 채택하는 경우, 그 발명이나 고안 등에 대하여 권리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공무원제안제도의 취지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

25) 대법원 2009. 8. 14. 선고 2008가합115791 판결

이므로 위 규칙이 공무원의 모든 발명에 대하여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직무발명이나 직무고안 등에 한하여 권리가 승계되는 것으로 한정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sup>26)</sup>

일반적인 회사에서도 위와 마찬가지로 직원이 완성한 모든 발명에 관한 승계규정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 규정 전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고 직원이 완성한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부분은 유효하므로 직원이 완성한 직무발명은 승계되는 것이 맞습니다.

## ❖ 보상금의 산정과 지급

###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의 유형

일반적으로 기업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대가(보상)의 종류로는 발명보상,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적보상 등이 있으나, 보상금 종류 및 보상금액 등은 사용자와 직원이 협의하여 정하고, 종업원등이 사용자등으로부터 지급받은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며, 사용자는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세액공제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26)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가합9775 판결



#### 가. 발명(제안)보상

발명제안보상은 종업원 등이 고안한 발명을 특허청에 출원하기 전에 받는 보상으로 출원 유무에 관계없이 지급되며, 종업원등의 아이디어와 발명적 노력에 대한 일종의 장려금적 성질을 가진 보상입니다.

#### 나. 출원보상

출원보상은 종업원등이 한 발명을 사용자등이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특허청에 출원함으로써 발생하는 보상입니다.

출원보상은 미확정 권리에 대한 대가이지만, 특허성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출원한 것이고, 일단 출원 후에는 후출원 배제의 효과와 출원공개시 확대된 선원의 지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보상입니다.

#### 다. 등록보상

사용자등이 승계한 발명이 최종적으로 등록결정되었거나 특허등

록되어 권리를 확보한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입니다.

라. 실시보상

사용자등이 출원 중인 발명 또는 특허 등록된 발명을 실시하여 이익을 얻었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사용자등이 얻은 이익의 액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마. 처분보상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실시를 허여했을 경우 받는 보상으로 실시보상과 마찬가지로 처분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바. 출원유보보상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을 사내노하우 등으로 보존하는 경우 또는 공개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출원을 유보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으로서, 이 경우 보상의 액은 당해 발명이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지 아니함으로써 종업원등이 받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sup>27)</sup>

사. 기타 보상

이 밖에도 출원발명의 심사청구시에 보상하는 심사청구보상, 자사의 업종과 관련 있는 타인의 출원발명에 대하여 심판에 참여하여 그 권리를 무효로 한 경우 또는 자사의 특허에 대한 침해 적발시에 지급하는 방어보상 등이 있습니다.

---

27) 발명진흥법 제16조

회사에서 저의 노력을 인정해줘서 기분이 좋네요!  
아직 저의 발명이 제품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만약 '대박'이 난다면 더 보상받을 수 있나요?

회사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지만, 직무발명 보상금의 대표적인 유형은  
①출원(등록)에 대한 포상인 '출원(등록)보상'  
②발명이 적용되어 매출신장이 발생했을 때 주어지는 '실시보상' 등이 있습니다.  
이 대리님의 발명이 '대박' 제품의 탄생에 상당히 기여했다면 회사 규정에 따라 적절한 '실시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출원(등록)보상

실시  
보상



##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의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가. 사실관계

- 원고(X)는 피고 회사(Y)에서 개발과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 X는 Y회사 재직기간 중에 발명을 완성하였고, X가 완성한 직무발명들은 Y회사로 승계되었으며 Y회사가 이를 출원하고 등록받아 제품을 생산·판매하였다.
- Y회사는 X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X는 Y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 나. 결론

이 사건에서 법원은 X가 한 발명이 직무발명임을 인정하고, Y회사에게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는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의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및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직무발명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sup>2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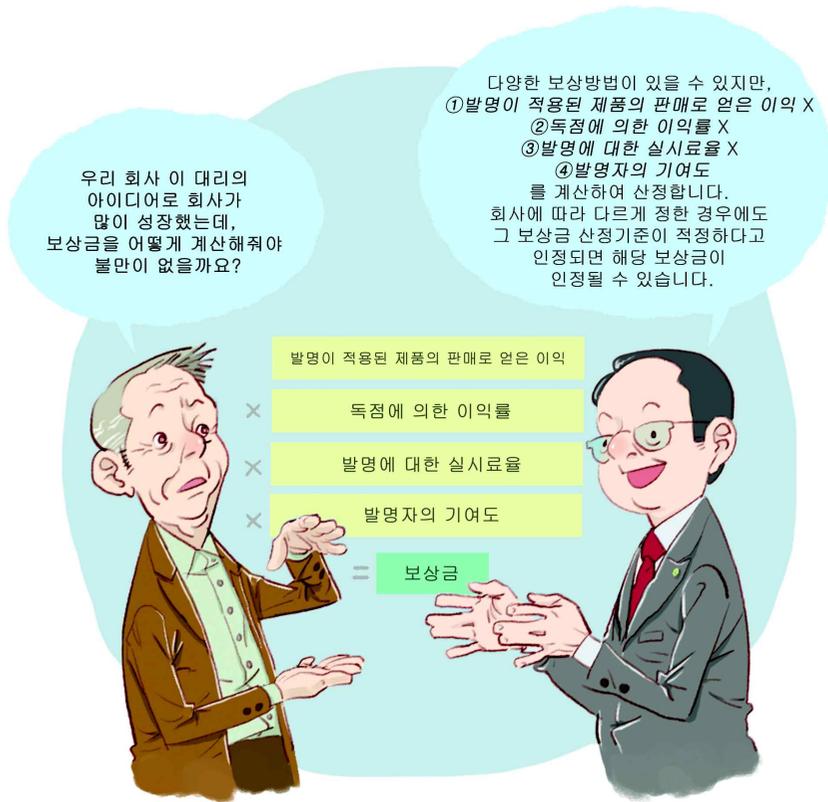
---

28)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4가합22 판결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 A×B×C×D]**

- A : 발명이 적용된 제품의 판매로 얻은 이득액
- B :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익률
- C : 발명에 대한 실시료율
- D : 원고의 기여도



● 임금이나 성과급 등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을 갈음할 수 있는가?

가. 사실관계

- 원고(X)는 1998년 피고 회사(Y)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3년 4월에 퇴사한 자이다.
- X는 Y 회사에 재직 중에 이 사건 발명을 완성하였고, 그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Y회사에게 양도하였다.
- Y회사는 위 발명을 출원하여 등록받았고, 제품을 제조·판매하여 이익을 얻었는데, X는 Y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을 청구하였다.

나. 결론

법원은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법률은 강행규정이므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발생, 행사 및 보상금의 정당한 액수에 어떠한 제한을 가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은 무효이고, 이러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노동의 대가인 임금과는 그 성격이 명확히 구분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일반적인 임금, 성과급 등의 지급으로써 특정한 직무발명 보상금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기 사건에서 Y회사가 X와 형식상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X에게 Y 회사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약 1억 2400만원 상당을 자문비, 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주었으며 성과급 등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무발명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sup>29)</sup>

---

29) 대법원 2009. 10. 7. 선고 2009나268409 판결

또 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직무발명의 완성대가로 임금을 인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급여에 관한 것으로서 직무발명보상금과는 다른 성격의 채권이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sup>30)</sup>

●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의 업무가 다른 회사로 양도(M&A)되었을 경우, 이전 회사에 근무할 때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을 새로운 회사에 주장할 수 있는가?

가. 사실관계

- 원고(X)는 공동피고인 Y1 회사에 재직 중 발명을 완성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Y1 회사에 양도한 자이다.
- Y1 회사는 위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았고, Y1 회사는 무선단말 기사업부분에 관한 자산, 채무, 영업비밀, 계약상 지위 등을 Y2 회사에 양도하였으며, X는 Y2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였다.

나. 결론

위와 같은 사건에서 X는 Y1 회사의 '직무발명보상규정'이 정하고 있는 '처분보상'의 규정에 따라서, Y1 회사가 Y2 회사와 체결한 양도계약에 따라 특허권을 양수한 Y2가 이 사건 각 특허권을 라이선스하여 얻는 수입을 기준으로 X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Y2 회사는 Y1과의 양도계약에 의하여 무형자산 중 일부러 특허

30) 대법원 2009. 9. 11. 선고 2008가합4316 판결

를 받을 권리 또는 특허권만을 인수하였을 뿐 X가 주장하는 이 사건 보상금 채무는 인수대상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X로서는 Y1, Y2가 이 사건 각 특허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실시료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처분보상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 자명하므로, X의 이 사건 보상금 청구권은 계속적인 라이선스 발생 이후에 비로소 행사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X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X가 Y1 회사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때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Y1 회사의 직무발명보상규정에서 정한 각 사유에 따른 개별적인 보상금 청구권은 각 사유의 발생시점에 함께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Y1 회사와 Y2 회사의 양도기준일(2001. 4. 30.)을 기준으로 양도기준일 전에 발생한 보상금은 Y1 회사가, 양도기준일 이후에 발생하는 보상금은 Y2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 회사에 있던 김 과장이  
퇴사 후에 우리 회사 제품과  
유사한 제품에 대한 발명을  
특허출원하였는데...  
애매하네요.  
이런 경우도 우리 회사가  
일정한 권리를 가질 수 있나요?

문제가 많은 경우죠.  
발명이 김 과장의 재직 중 완성된 것이라면  
김 과장이 퇴직 후 출원하더라도 직무발명에  
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퇴직 후 완성된 발명은 원칙적으로는  
직무발명이 아닙니다.  
발명의 완성시점이 퇴직 전, 후인지에 대한  
판단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므로  
퇴직 후 몇 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발명은  
전 사용자에게 승계한다는 추적조항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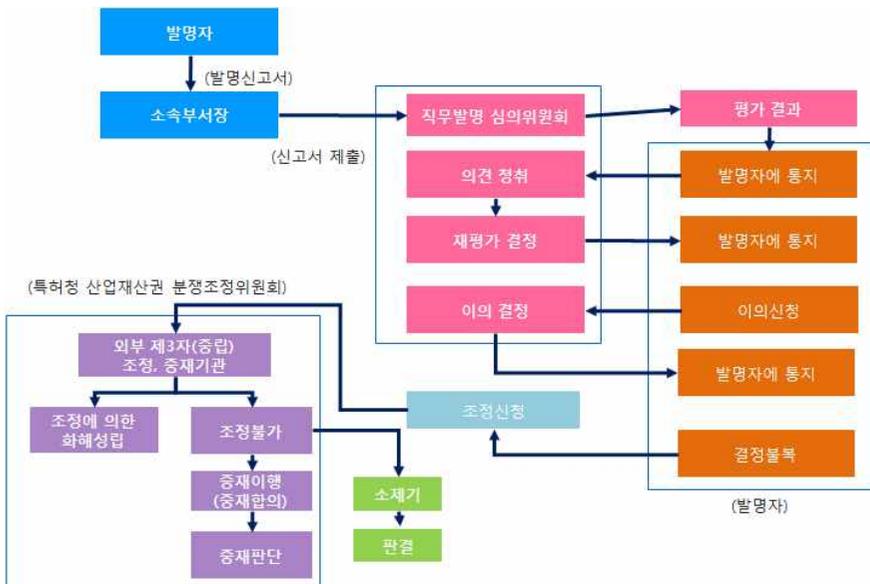


## ❖ 직무발명을 둘러싼 다툼의 해결

### ●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불만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나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상금 청구권은 사법(私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 내에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등을 두어 발명자 직원과 회사 간에 송사(訟事)가 발생하기 전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에서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으로 가기 전에 특허청에 설치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시간적·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혹시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불만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기 전에 회사의 직무발명 관련규정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보상금에 불만이 있다면 회사에 '직무발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어렵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특허청에 설치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불만 해결

특허청의  
분쟁조정위원회

사내 직무발명  
관련규정 숙지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개최



## ● 직무발명 보상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쟁의 발단은 결정된 ‘보상액’에 대한 발명자인 종업원등의 불만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먼저 보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이루어지는 종업원등으로부터의 의견청취 단계에서 사용자등이 결정한 보상액의 산정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고, 그 이해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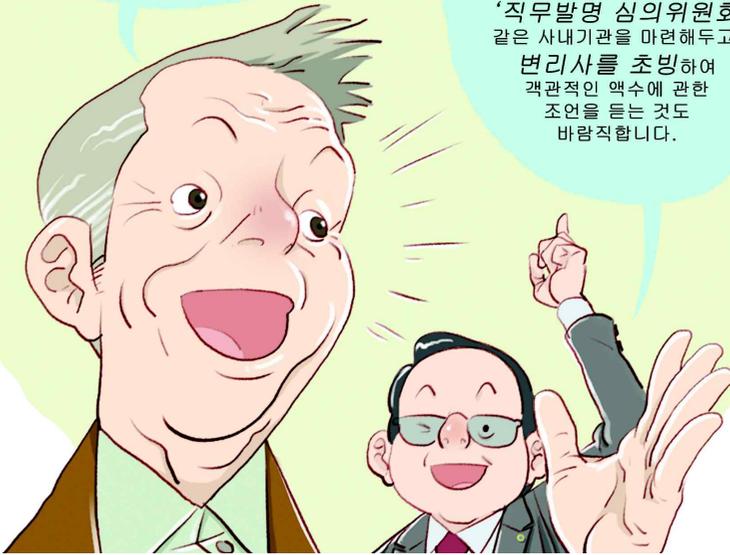
그 설명에서 직무발명규정의 적용,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액, 발명과 관련하여 사용자등이 한 부담, 공헌 및 종업원등의 처우, 자사 및 타사에서의 종래의 사례, 기타 사정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발명자인 종업원등은 발명 그 자체의 기술적 평가가 높은 것에 비례하여 반드시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 발명을 제품화하고 제품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기 위해 기업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의 사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발명자가 스스로 그 발명을 사업화하여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같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보상액의 타당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정된 보상액에 관하여 종업원등의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분쟁의 불씨가 되는 불만에 관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그에 대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불복신청에 관하여 심의할 사내기관을 마련해 두고, 그 기관에는 중립·공정을 기하기 위해 또는 종업원등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의미에서라도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직무발명제도는 직원과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기에 최적의 제도군요!  
하지만, 직원들이 완성한 발명의 가치와  
회사가 생각하는 해당 발명의 가치가  
다르면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예방책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문제는  
**‘보상액’** 때문에 발생합니다.  
보상액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당 발명을 제품화하기까지  
**회사의 노력**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도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한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같은 사내기관을 마련해두고,  
**변리사를 초빙**하여  
객관적인 액수에 관한  
조언을 듣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 ● 직무발명 보상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재판에 의하여 해결하려고 한다면 법원에서 하는 흑백을 가리므로 승자와 패자가 확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항소, 상고라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있어 다툼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상 제출된 주장과 입증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판단하기에 완전한 입증을 한다는 것이 당사자에게 용이한 일은 아니며, 사용자등의 공헌도, 발명자 측의 공헌도와 같은 대응하는 요소의 판단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어떤 평가방법으로 정하는가 라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승패의 예측, 보상액의 예측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직무발명 소송이 안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회피하고, 사태 해결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중재’, ‘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을 이용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해결에 이르는 지름길이 소송에 의한 승패만은 아닙니다. 회사는 발명자인 직원을 이해하고, 직원은 회사를 신뢰한다는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내고, 서로 이해와 신뢰를 기반으로 대화에 중점을 두고 협의를 함으로써 보상액을 정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보상 결정을 위한 종업원등으로부터의 충분한 의견청취가 이루어진다면, 분쟁의 예방이 가능하며, 설사 발생하였다고 해도 원만한 해결로 이어질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 ❖ 기타

### ● 공무원이나 국공립학교 교직원이 한 직무발명은 어떻게 취급되나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국유나 공유가 됩니다. 다만,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담조직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됩니다.<sup>31)</sup>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이 국가 등에 승계된 경우에도 역시 승계한 측에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sup>32)</sup> 그리고 국유가 된 특허권의 처분 및 관리는 특허청장이 관장합니다.<sup>33)</sup>

### ● 퇴직 후 발명 또는 출원은 어떻게 취급되나요?

직원이 회사를 퇴직한 후의 발명 또는 출원이 재직 중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 문제가 많이 됩니다. 퇴직 후 발명은 원칙적으로는 직무발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발명이 재직 중에 완성된 것이라면 퇴직 후에 출원하더라도 직무발명에 해당하며, 나아가 퇴직 후에 완성된 경우라도 그 발명의 상당 부분 또는 주요 부분이 재직 중

31) 발명진흥법 제10조 제2항

32) 발명진흥법 제15조 제4항

33) 발명진흥법 제10조 제4항

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직무발명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발명의 완성시점이 퇴직 전인가 후인가의 판단은 매우 곤란하므로 그에 관한 대비책으로 퇴직 후 일정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발명은 종전의 사용자등에게 승계한다는 내용의 고용계약규정, 이른바 추적조항(追跡條項)을 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구적인 추적조항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추적조항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민법상 무효라 할 것이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직무발명제도 관련 법규



## 직무발명제도 관련 법규

### ❖ 직무발명 관련 규정

#### 가. 발명진흥법

(2011. 3. 30. 시행 법률 제10489호)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 제10조(직무발명)

-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 ③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특허권등의 포기를 포함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 ① 정부는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실시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표준이 되는 보상규정의 작성 및 보급
  - 2. 보상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규정의 작성 및 보급
- ③ 정부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사용자등에 대하여는 제3장과 제4장에 따른 발명의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먼저 하여야 한다.

### 제12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한다.

### 제13조(승계 여부의 통지)

- ①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sup>34)</sup>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등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 ③ 사용자등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 제14조(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34) 법 제12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를 말한다(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이 제삼자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면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을 갖는다.

###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이 다음 각 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본다.
  1.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의 상황
  2.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게시 등 종업원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 상황
  3.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할 때 종업원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상황
-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④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 제16조(출원 유보시의 보상)

사용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出願)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발명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17조(직무발명 심의기구)

- ①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 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직무발명 보상에 관한 종업원등과 사용자등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 심의기구는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의 대표, 제26조에 따른 특허관리전담부서의 장 등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등이나 종업원등은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종업원등은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등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벌칙)**

-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죄는 사용자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2012. 1. 6 시행, 대통령령 제23488호)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5조 및 제56조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생략)

## 2012년도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사례집

### ■ 자료작성

감	수	_ 산업재산정책국	국 장	이영대
		산업재산진흥과	과 장	구영민
		산업재산진흥과	사무관	최정봉
		산업재산진흥과	주무관	강민구
작	성	_ 한국발명진흥회	팀 장	유태수
		한국발명진흥회	차 장	허동욱
		한국발명진흥회	주 임	이민희

■ 발 행 \_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진흥과  
한국발명진흥회

■ 발 행 일 \_ 2012년 12월



ISBN 978-89-6199-570-2 13500